

韓國農村地域에 있어서의 雇傭, 勞動生産性 및 實質賃金率*

安 秉 直

<目 次>	
I. 머리말 II. 資 料 1. 農家經濟調査 및 農產物生産費 調査結果報告 2. 補充調査資料 III. 「潛在失業」의 理論과 經驗的 研究 1. 「潛在失業」의 理論적 基礎 2. 「潛在失業」에 대한 經驗적 研究 3. 「潛在失業」의 概念	IV. 雇傭과 勞動生産性 1. 耕作規模와 段當產出高 2. 限界勞動生産力과 「剩餘」勞動 3. 勞動生産力과 賃金水準 V. 農業勞動力人口와 農業勞動力의 移動 1. 農業勞動力人口 2. 農業勞動의 雇傭 3. 農業勞動力의 移動 VI. 맺 는 말

I.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低開發經濟의 發展理論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潛在失業」假說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 假說이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통계 자료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실증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검증하는 데 있다.

「潛在失業」假說을 재검토하고 그 개념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실증되는가 되지 않는 가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潛在失業」假說의 재검토와 실증의 중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갈라 볼 수 있다. (1) 일반적으로 低開發國에 있어서는 농촌지역에 농업생산의 增加에 기여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인구가 존재하며, 이들을 他生産活動에 轉用함으로써 저개발경제의 발전을 위한 槓杆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되고 있다. (2) 저개발경제의 기본특징은 二重構造이며 「潛在失業」假說이 이 二重構造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이론적 기초로 되고 있다. (3) 저개발국의 농업은 小農經濟이며, 非資本主義經濟이다. 따라서 소농경제에는 자본주의 경제이론이 적용될 수 없는데 소농경제의 분석을 위한 무기가 「潛在失業」假說이라는 것이다.

* 이 연구는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의 研究費支給으로 이루어졌다.

위에서 든 바와 같이 이 「潛在失業」假說은 저개발국의 經濟構造와 農業經濟를 분석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론이 될 뿐만이 아니라 經濟發展政策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作業假說이 되고 있다. 따라서 「潛在失業」假說도 명백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며 복잡하고 多岐한 것이다. 이 論文에서 이 복잡하고 다기한 「潛在失業」假說의 모든 變種들을 일일히 추적하여 그 이론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며 그 現實性與否를 실증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小論에서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그 現實性을 실증하려는 어느 종류의 「潛在失業」假說을 명확히 밝히는 作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또 우리가 도출하려는 결론도 이 假說에 대해서만이 타당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명확히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은 이 小論의 의도하는 바가 막연하게 韓國에 「潛在失業」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 結論을 도출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느 종류의 「潛在失業」假說에 입각해서 韓國에 「潛在失業」이 있는가 없는가를 실증해 보면 韓國에는 명백히 「潛在失業」이 발견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潛在失業」假說은 아무런 現實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느 종류의 「潛在失業」假說이란 R. Nurkse, A. Lewis, H. Leibenstein, P.N. Rosentain-Rodan, N. Georgescu-Roegen, R.S. Eckaus 등이 제시하는 것들이다. 그들 간에도 부분적으로 이론적 相異點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론의 一致를 보여 주고 있다. (1) 農業勞動 중에는 일하고 있기는 하나 產出高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 勞動 즉 노동의 限界生産力이 零이거나 零 以下인 「潛在失業」이 있다. (2) 이렇게 漫性的으로 실업된 노동은 生産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農業으로부터 他産業으로 轉用할 수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한국농업에서는 전혀 「潛在失業」이 발견되지 않는다. 흔히들 이 이론을 반박하려는 논자들이 그 根據로서 세계도처에서 농번기에는 노동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높다든가, 어디서나 농업노임이 상당히 높다든가 하는 등등의 사실을 들고 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통계자료가 제시하는 바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농업의 限界勞動生産性은 현저히 +이며 일반적으로 「潛在失業」이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零細農에 있어서의 限界勞動生産性이 大農에 있어서의 限界勞動生産性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 통계자료가 信憑性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產出高를 감소시키지 않고 농업에서 제거될 수 있는 「潛在失業」이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농업노동의 한계생산성을 논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농촌노동력 중에서 農業勞動을 실제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농촌에 만약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失業者가 있다면 이들은 분명히 드러난 自發的 실업이거나 非自

發的 실업일 것이다. 만약 傳統的 價値觀에 사로잡혀 아무런 다른 직업이 없이 일하지 않거나 일하는중 마는중 하는 노동력이 있다면 이들은 傳統的 價値觀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일 것이다. 작물재배와 기후적 조건 때문에 季節的으로 실업하는 노동력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季節的 失業인 것이다.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產出高에는 조금도 기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방해가 되는 즉 限界勞動生産性이 0이거나 -인 보이지 않는 「潛在失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적 자료에 의하여 실증될 뿐이다.

II. 資 料

우리는 한국농촌에 있어서의 「潛在失業」의 有無를 실증하기 위하여 농림부의 조사자료, 『농가경제조사 및 농산물생산비조사 결과보고』를 主資料로 이용하고 이 자료에서 누락되었거나 기타자료에서도 발견되지 않으나 우리의 研究目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이용하였다.

1. 농가경제조사 및 농산물생산비조사 결과보고

이 조사는 농가경제 및 경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農村實態調查』라는 이름으로 1953년 7월 1일부터 農林部와 韓國銀行의 합동으로 실시되었으나 1954년 7월 1일부터는 각각 분리하여 실시되어 오다가 1962년 12월 8일을 기하여 指定統計 제8호로 공포됨으로써 農林部 단독으로 실시하여 왔다. 그러므로 이 조사는 標本의 數·選定方法, 調查事項 및 調查方法에 있어서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어 왔으며 그 信憑度도 각각 다르나 우리의 연구대상인 1968~1971년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조사의 調查對象은 1段步 이상의 경지를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짓는 농가이다. 그러므로 경지 1단보 미만을 경작하는 가수와 경지 1단보 이상을 경작하기는 하나 試驗場, 學校, 宗教團體 등의 準農家は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종래에는 記帳能力이 없는 농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위의 기간에 있어서는 표본의 객관성을 살리기 위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즉 1단보 이상의 경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準農家を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전부 조사대상이 될 수 있었다.

표본의 크기는 1,200농가이다. 표본의 크기를 1,200개로 제한한 이유는 첫째 예산과 조사원의 수, 조사원의 부담능력을 감안하고 둘째 1960년도의 농업센서스의 사후조사 설계를 위한 豫備調査의 분석결과 밝혀진 許容誤差 5%의 표본크기는 1,200호였기 때문이다. 표본선정방법은 任意표본선정방법에 의거하였다. 표본設計는 層化三段抽出法을 채택했으며 제1차 추출單位는 시·읍·면이고, 제2차 추출單位는 인구센서스 때 설정한 인구조사區이

고, 제3차 추출단위는 농가로 하였다.

層化의 원칙에 있어서는 동일표본에서 농가경제와 작물생산비의 두 조사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이들 두 조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다음의 제 지표를 채택하였다.

- (1) 도시와 농촌의 조사대상 限界인 시·읍·면의 區分과 전호수에 대한 농가호수의 비율
- (2) 지대區分과 경영형태區分을 보기 위하여 耕地率과 畝率로 구분하여 경지율은 4개 계층, 그리고 畝率은 3개 계층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 (3) 농업생산력의 차이를 주는 요소로서 蒙利畝과 非蒙利畝 구역의 구분
- (4) 지역별 주요作物 즉 쌀을 제외한 보리, 쌀보리, 밀 등을 層化에 있어서 주요작물로 고려하였다.

이 결과 얻어진 層의 총수는 80이다. 80개 각층의 크기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각층의 크기는 전국 총농가를 80으로 나눈 수 27,100으로 하고 각 도별 총수는 80을 농가호수에 比例配定하여 산출한 것이며 그 結果는 <표 1>과 같다.

<표 1>

道別 層의 크기

道	別	農家戶數(A)	A/27,100	實際總數	實際의 크기
京	畿	235,549	8.69	9	26,200
江	原	137,607	5.08	4	27,500
忠	北	147,099	5.43	5	29,140
忠	南	254,064	9.37	9	28,200
全	北	259,285	9.57	10	25,900
全	南	381,018	14.06	14	27,200
慶	北	371,627	13.71	15	26,500
慶	南	337,895	12.47	12	28,200
濟	州	44,142	1.63	2	22,100
	計	2,168,286	80.01	80	27,100(平均)

조사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국 80개 조사지구에는 우선 통계조사에 상당히 숙달된 調查員을 1명씩 두고 표본농가에 日計簿를 배부하고 그 기장을 지도한다. 이 조사의 根幹이 되는 일계부는 농가에 비치하여 그날 그날의 농가경제의 동태를 농가가 직접 기장하도록 하되 조사원이 그것을 지도하며 만약 직접 기장할 능력이 없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원이 그 기장을 대신한다. 조사원은 또 農家經濟調查原簿(財産臺帳)을 가지고 직접 연 2회 농가재산의 이용상태와 변동상태, 재고농산물, 생산자재, 현금, 준현금 및 차입금상황 등을 파악한다.

調査항목은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에 따라 각각 다르다. 여기에서 조사항목

을 일일히 나열할 필요는 없거니와 앞으로 우리의 분석과 관련되는 몇가지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自家에서 지출하는 생산비의 평가 즉 가족노동의 임금, 자경지의 임차료 등의 평가는 농산물생산비조사에는 나타나 있으나 농가경제조사에서는 전혀 漏落되어 있고 또 여러가지 方法을 통한 계산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자가지출생산비에 대한 평가는 조사하기에도 아주 어려운 뿐만이 아니라 다분이 자의성이 개입할 소지가 많기는 하나 농산물생산비조사가 각 작물별로 행해져 있어 농가전체의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행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목적상 여러가지 指標를 이용하여 IV에서 자가지출생산비를 적당히 評價하여 보았다. 둘째 投下노동량의 남녀간, 연령간의 換算문제이다. 이 조사에서는 만 20-55세의 男子成人勞動을 100으로 할 때 동 연령계층의 女子成人勞動을 80으로 보고 남녀간, 연령간의 투하노동량환산을 <표 2>와 같이 행하였다.

<표 2> 勞 動 能 力 評 價 表

符 號	勞 動 能 力(%)		年 齡	符 號	勞 動 能 力(%)		年 齡
	男	女			男	女	
1	30	20	10-14	5	80	60	56-60
2	60	60	15-16	6	60	60	61-65
3	80	60	17-19	7	30	20	66-
4	100	80	20-55	8	0	0	

2. 보충조사자료

이 연구를 위하여 우리는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附設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의 협조를 얻어 농림부, 『농가경제조사 및 농산물생산비조사 결과보고』에서는 漏落되었으나 우리의 연구를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행하였다. 調查時日은 1971년 2월중이며 調查對象地域은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장암리와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서경동 및 신계동이였다.

이 조사지역은 유의추출된 것인데 우리가 이 지역들을 조사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두 지역 모두 田畝保有的 비율에 있어서 韓國의 다른 농업지대와 비슷하며, 주요 재배작물이 特用作물이 아니고 米麥 등 곡류재배지역이라는 점에서도 韓國의 일반농업지대와 비슷하였다. (2) 영암의 경우는 교통이 대단히 편리하고 읍소재지와 2km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軍械의 경우는 교통이 대단히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읍소재지와 12km 떨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1960년대에 시작한 韓國의 經濟開發計劃이 노동력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양지역에 상이한 충격을 주리라고 기대하였다. (3) 이 조사는 한 社會學的 조사

와 합동으로 행해졌다. 영암의 경우는 文氏同族部落이며 군위의 경우는 金氏가 우세하게 살기는 하나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異姓만이 部落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조사목적과는 다른 이 社會學的인 조사의 制約條件 때문에 우리의 조사지역선정이 전혀 제약받지는 아니하였다.

조사대상은 농림부조사와의 比較性을 높이기 위하여 1段步 이상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직진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218개이며 군위의 경우가 107개이며, 영암의 경우가 111개이다. 표본의 선정에 있어서는 1개 혹은 2개의 自然部落을 전수 조사하는 方法을 취하였다.

조사항목은 농경지保有狀況, 水利灌溉상황, 二毛作실시상황, 농업勞動力상황, 농업勞動力이용상황, 농업勞動力이동상황 등이었다. 이 조사에서 우리가 특히 세밀히 조사한 것은 농림부 조사에서 누락된 水利灌溉상황, 二毛作실시상황, 농업勞動力이용상황 및 농업勞動力이동상황이었다. 우리 조사와 농림부 조사에서 중복되는 조사항목은 농경지보유상황과 농업노동력상황이다. 이 두 가지 조사항목에서 두 조사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림부조사에서는 누락되었으나 우리가 조사한 각 項目들이 대체로 전국의 대표치로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III. 「潛在失業」의 이론과 경험적 연구

우리는 우선 한국에 있어서 「潛在失業」이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실증하기 전에 「潛在失業」의 이론적 기초가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가 어떠한가를 검토하며, 우리의 目的에 따라서 「潛在失業」의 개념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Charles H.C. Kao, Kurt R. Ansel과 Carl K. Eicher의 「潛在失業」理論의 발전에 대한 「서베이」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1]

1. 「潛在失業」의 이론적 基礎

여기서는 「潛在失業」개념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假定과 이론적 基礎를 음미해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經濟學者들은 「潛在失業」을 產出高를 줄임이 없이 제거될 수 있는 노동력의 부분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또 그들은 다른 變化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즉 다른 재조건이 일정하다는 것도 가정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만약 그들이 傳統的 경제이론의 期待와는 상반되게 「潛在失業」이 왜 존재하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다음의 제 질문에 해답을 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 만약 노동이 실업되거나 낭비되고 있다면 왜 勞動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土地와 資本을 적게 쓰는 技術이 도입되지 않는 것인가? (2) 技術(고정된 資

本—土地—勞動比)이 주어졌다면, 왜 勞動이 전혀 收益이 나오지 않는 점까지 利用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임금노동의 雇傭主는 조금도 產出高에 기여하지 못하는 勞動者에게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損失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家族勞動은 자기경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보다 그들의 剩餘勞動을 임금을 받고 파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3) 왜 賃金은 限界勞動生産物보다 높은가? 만약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전혀 생산을 하지 않든지 거의 생산하지 않는다면 賃金이 勞動의 限界生産物에까지 내려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몇몇 經濟學者들이 위의 問題에 대하여 어떠한 해답을 주는가를 概觀 하겠다. Echaus[2]는 첫째 문제만을 논증하였다. Lewis[3], Georgescu-Roegen[4], Leibenstein[5], [6]과 Nurkse[7]는 둘째 문제와 세째 문제에 대하여 解答을 주었다. 다른 한편 Mellor[8]는 失業이 수요의 缺如와 관련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解答을 제시하였다.

Eckaus는 「潛在失業」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적 제약조건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農業技術이 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농업노동의 流出이 產出高를 감소시키지 않을 때에 「潛在失業」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만약 노동이 過剩이라면 왜 보다 勞動集約的인 기술이 이용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해답을 주었다. 가장 勞動集約的인 농업생산과정이라고 하더라도 單位勞動에 대하여 어떤 최소한도의 資本量을 요구한다. 즉 어떤 최소한도의 勞動對資本의 비율이 있는데 많은 저개발국은 그들이 全勞動力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資本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勞動供給의 일정 부분이 이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ckaus는 왜 노동이 그 限界生産物이 0이 될 때까지 이용되는데 반하여 계속 +의 賃金を 지불하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Lewis는 그의 유명한 論文에서 저개발국의 生存經濟部門과 資本主義部門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過剩勞動은 도시지역에서나 농촌지역에서나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농촌過剩勞動은 모든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僞裝되어 있지만 그중의 일부분을 流出시키더라도 產出高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도시 過剩勞動은 농촌의 그것과는 달리 명백히 실업되어 있다. 짐꾼이 다음 배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는가, 소매상이 고객을 기다린다는가, 심부름꾼이 정원에 앉아서 기다린다는가 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노동자들은 농촌이거나 도시이거나를 막론하고 그들이 限界生産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傳統的 임금을 받는다. Lewis는 농촌에서의 平均勞動生産物이 전통적 임금을 결정한다

고 암시하였다. 資本主義部門에 고용된 노동자도 生存經濟部門에 勞動過剩이 있는 한 또한 전통적 임금을 지불받는다. 이러한 낮고 고정된 임금이 資本主義部門에의 再投資를 위한 커다란 이윤을 가능케 한다. 이윤은 資本主義部門의 크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國民所得의 보다 많은 부분이 재투자되기 때문에 경제는 보다 급속히 발전한다.

이 論文에서 Lewis의 「潛在失業」의 概念에 관한 가장 커다란 공헌은 노동의 限界生産物이 0일 때 0보다 큰 임금의 존재에 대한 그의 해명이다. 그는 傳統과 選擇機會의 결핍을 가지고 그들의 限界生産物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나 +임금을 받는 自家勞動의 존재를 설명한다. 즉 소농경제에 있어서는 각 가족구성원은 그들의 생산에의 기여와는 관계없이 가족의 平均生産物을 받는다. 그리고 가족농업의 평균생산물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機會가 없기 때문에 농가를 떠날 유인이 없으며 평균생산물이 한계생산물보다 높게 되는 것이다.

Georgescu-Roegen은 농업노동의 0의 限界生産物에 대하여 다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資本主義도 社會主義도 過剩人口를 가진 나라에 있어서는 농업을 營爲하는 효율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資本主義下에서는 노동은 그 한계생산물이 임금을와 같아지는 점을 넘어서는 고용되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노동력의 一部分이 실업하게 되고 총농업產出高는 극대화되지 못한다. 그러나 封建主義는 가족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임금과 같아지는 점 이상으로 고용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총산출고 틀극대화 하는 제도적 裝置를 마련한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오늘날 封建主義는 개별소농에 의하여 대체되었으나 소농가족 노동의 고용은 한계생산력의 원칙보다는 總家族產出高를 극대화하는 原理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총농업產出高는 여전히 극대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농의 總產出高가 극대화될 때에 限界產出物은 0이다.

Leibenstein도 0보다 큰 賃金率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해답을 주고 있다. 노동이 실업되어 있고, 勞動市場이 경쟁적일 때 임금은 아주 낮은 수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는 0보다 큰 賃金現象을 노동생산력과 임금율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설명한다. 賃金率이 상승할 때 보다 개선된 營養攝取로 말미암아 인당산출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領主는 임금율이 떨어져서 영양섭취가 악화되고 따라서 인당산출고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가용노동을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 노동력의 일부분만을 고용한다면 純收益은 커질 것이지만 임금이 떨어져서 생산력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Nurkse는 「潛在失業」을 어떤 組織的 變化가 도입되었을 때 勞動의 0의 限界生産物로 정의하였다. 만약 耕地統合과 같은 조그마한 變化가 허용된다면, 그 때 상당한 양의 農業 勞動은 농업산출고를 감소시키지 않고 댐이나 農村道路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다른 사업

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Nurkse는 가족노동은 그 代價가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산출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노동이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식량이 가족구성원간에 분배되는 自由土地保有小農을 가정하고 있다. Nurkse는 여가의 감소나 혹은 남아있는 노동자에 의한 보다 고된 노동에 의하여 상당한 勞動節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勞動節約은 노동시간의 보다 나은 이용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나쁜 組織 때문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든지, 原料와 生産物을 운반한다든지, 다른 노동자를 組織하거나 감독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일에 지출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再組織을 통하여 충분한 노동시간이 다른 사업에 勞動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농업조직에 있어서의 변화를 통한 과잉노동의 流出에 대한 Nurkse의 初期樂觀主義는 1958년 그가 농업조직에 있어서의 그러한 變化는 「중요한 사업이며 가볍게 전제될 수 없다」[9, p. 262]고 말했을 때 약간 수정되었다.

마지막으로 Mellor의 경우를 들어보자. 그는 「潛在失業」을 논의할 때에 需要의 缺如를 가정하였다. 그는 저개발국에 있어서 소농은 전통적으로 결정된 최저한도의 生活水準을 획득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기는 하나 전통에 얽매인 消費패턴 때문에 그 水準 이상으로 所得을 증가시킬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Mellor의 이러한 주장에는 아무런 경험적으로 뒷받침될만한 자료가 없다.

2. 「潛在失業」에 대한 경험적 研究

일반적으로 말하면 「潛在失業」을 측정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첫째는 직접적인 방법인데 標本調査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방법은 勞動利用과 勞動生産性接近法을 사용하고 있다. 노동이용접근법은 自己농지에서나 남의 농지에서 투하된 노동량을 總勞動量의 百分率로 나타내는 것이다. 노동생산성접근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투하된 勞動量 혹은 총노동량과 생산수준과의 관계를 음미해 보는 것이다.

2차적 자료에 의존하는 간접적 방법이 「潛在失業」측정의 둘째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세 가지 變種이 있는데 (1) 주어진 產出量을 생산하는데 必要한 勞動時間의 數와 農業活動人口에 의하여 수행 가능한 勞動時間의 數와의 차이, (2) 주어진 형태의 耕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人口密度와 현실적 人口密度와의 차이, (3) 실제적인 농경지면적과는 대조되는 한 사람에게 「標準所得」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어진 형태의 耕作下에서 요구되는 農耕地面積과 가용노동인구와의 차이를 각각 측정하는 것이다.

1) 타일랜드에 있어서의 Mellor와 Stevens의 研究

Mellor와 Stevens는 「방·찬」의 104개의 米穀農家에 대한 개인적 인터뷰에서 얻은 勞動所得記錄을 기초로 타일란드에서의 농업노동의 平均생산성과 限界생산성을 연구하였다.[10] 모든 農家は 비슷한 米穀生産函數를 가진 것으로 가정되었다. 米穀의 總產出高는 대부분의 미곡이 도정을 위하여 지방정미소에 운반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측정되었다. 勞動投入은 각 농가에서 농업노동에 가용한 사람수에 대한 인터뷰를 기초로 男子노동으로 換算되어 측정되었다. 이 분석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農業勞動에 이용될 수 있으나 일하지 않는 노동은 農業投入의 일부로서 계산되었다.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기는 하나 그들의 努力에 의해서 產出高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노동은 일하지 않으나 그러한 작업에 이용될 수 있는 노동과 다르게 취급되지 않았다.」(p.785) 勞動生産性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들은 最小自乘線型回歸方程式을 이용하였다. 방정식은 $Y=30.4+13.5X$ ($Y=$ 총생산물, $X=$ 환산노동)이었다. 13.5당 (대체로 24파운드나 0.54붓셀에 해당한다)의 方程式에 있어서의 기울기의 値는 有意度 5%의 水準에서 0과 크게 다른 바가 없다. 따라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이것은 이러한 형태의 지역에서 노동의 限界生産력이 0이거나 0에 가깝다는 假說과 일치한다.」(p.987) 그러므로 「潛在失業」은 이 지역에서 존재하였다. 보다 최근에 Mellor[8]는 이 村落研究에 관해서 논평하면서 자료는 「潛在失業」에 관한 대체적인 추정 이상을 위해서는 부적합하다(P.3)고 하였다. 만약 노동의 同質性과 동일한 生産函數의 가정이 주어진다면 이 研究가 한계노동생산력을 측정하는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Harry T. Oshima는 1963년에 Mellor와 Stevens의 연구에 대해서 논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11] 「하나의 타일란드村落에서 104개 농가에 대한 한 경험적 研究가 있다. 이 개척적 연구에서 거기에는 0의 限界生産力을 가진 상당히 많은 農業勞動者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나는 이 연구가 이론적 혹은 정책적 용도에 대하여 결정적이라고 간주하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104개 농가의 각각에 대하여 미곡產出高를 노동投入에 관련시키는 分散圖에 있어서의 資料分布는 나에게는 저자에게와는 달리 線型回歸線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지 못한 자료와 애매한 가정을 암시해 줄 뿐이다. 예를 들면 그들은 104개 농가의 각각에 대한 미곡생산函數가 동일하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노동投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저자들은 15세 이하의 어린이노동을 배제하고 노동하거나 노동하지 않거나 간에 15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다.」(p.450)

2) 南部이태리에 있어서의 Rosenstein-Rodan의 研究

1957년 Rosenstein-Rodan[12]은 많은 저개발국에 있어서 「潛在失業」이 최소한도 5% 이상

이 있다는 것이 그의 확실한 信念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는 그의 신념을 남부이태리에서의 「潛在失業」의 측정에 의하여 뒷받침하고 있다. (p. 1) 그는 「潛在失業」의 경제적 개념을 사용하였다.

즉 다음과 같은 중요한 가정과 기준이 사용된다. (1) 단지 自小農과 小作農의 작은 경지 보유만이 취급된다. (2) 經濟活動入口은 14세와 65세 사이에 있다고 가정한다. 남자, 여자와 아동의 勞動效率의 相關係數가 각 형태의 경작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3) 過剩勞動者는 非自發的으로 실업되었다고 가정한다. (4) 연간이나 달마다 각 형태의 경작에 요구되는 노동시간이 계산되고 가용노동시간과 비교되었다. 연간 평균 270일의 可用노동시간이 가정되었다. (5) (a) 제거할 수 있는 「潛在失業」, (b)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적 「潛在失業」(이 範疇에 속하는 사람은 농업으로부터 제거할 수 없다), (c) 기후적 要因으로 인한 季節的 실업기간의 구별이 행해졌다. 이러한 구분은 「潛在失業」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勞動者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고려되었다. (6) 이 분석에 있어서 靜態의 개념으로부터 약간의 逸脫이 허용되었다. 저자는 상이한 형태의 경작, 재산의 상이한 크기와 형태, 노동력의 구성 및 수요되고 공급되는 노동시간의 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퀘스천네어」의 직접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리하여 Rosenstein-Rodan 은 「南部이태리 농업에 있어서 活動勞動力の 10% 이상은 過剩되어 있다」(p. 4)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Kenadjian[13]이 이 문제에 대하여 Rosenstein-Rodan 과 논쟁하는 중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Rosenstein-Rodan 이 남부이태리에서 실제농업인구의 약 10~12%는 제거될 수 있다고 관찰하였을 때, 그는 제거될 수 있는 過剩勞動中에(연중에) 50일 혹은 그 이하로 필요한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보다 엄격하며 보다 의미있는 定義가 채용된다면 제거할 수 있는 과잉노동은 5%로 줄어들 것이다.」(p. 250)

이것은 누구나 어느 저자가 농업에 있어서 10, 20 혹은 70%의 「潛在失業」이 있다고 주장할 때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저자가 사용한 定義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3) 그리스에 있어서의 Pepelasis 와 Yotopoulos 의 研究

Pepelasis 와 Yotopoulos[14]는 1953년으로부터 1960년간을 통하여 그리스농업에 있어서의 季節的 과잉노동과 유출할 수 있는 過剩勞動量을 측정하려는 巨視的 수준에서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유출시킬 수 있는 (탄성적) 過剩勞動은 다른 생산요소의 양에 있어서 조금도 변화가 없고 產出高의 어떠한 감소도 가져오지 않으면서 적어도 연중 내내 제거될 수 있는

勞動量으로 규정하였다. (p. 86) 그들은 過剩勞動을 농업부분에 있어서의 可用勞動과 주어진 產出高에 필요한 노동을 비교함으로써 측정하였다. 2차적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간접적 방법이 이용되었다. 可用勞動은 센서스에 의하여 측정된 것과 같이 15세로부터 69세까지의 農業人口의 크기로부터 계산되었다. 이 推計는 성인남자농업노동의 노동일수를 측정하는 환산계수를 기초로 하여 可用勞動과 동질적인 男子生産單位로 환산되었다. 끝으로 男子生産單位는 1953~1960년 사이에 가용男子生産日로 換算되었다.

농업, 축산, 임업, 어업과 농업수송을 위한 연간 농업노동수요에 대한 별도의 推計가 행해졌다. 각 연도의 農業活動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勞動集約度係數」 즉 勞動/土地나 자본계수를 적용함으로써 생산물별 연간 노동수요를 유도하였다. 勞動係數는 「그 해 農業產出高의 주어진 양을 생산하기 위하여 家畜頭當 혹은 產出高單位當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남자日數와 補助勞動에 대한 9시간 노동일로 표현되었다.」(p. 108)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농업에 있어서의 過剩勞動이 존재하지 않는다. 8년간의 時系列中에서 1953년과 1954년에 각각 3.5%와 2.3% 정도의 過剩勞動이 존재할 뿐이다. 그 기간의 다른 해는 계절적 勞動不足으로 특징되었다」는(p. 136)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만약 100명의 勞動人口를 가지는 어느 촌락에서 過剩勞動이 2%라면 이것은 우리가 그 촌락의 總產生高를 감소시키지 않고 일년 내내 두 사람의 노동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p. 138)는 것을 지적하면서 漫性的 실업의 제거가능성에 대하여 논평하였다. 이것은 노동이 육체적이거나 제도적 이유로 말미암아 可分性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예를 들면 2%는 다수의 가족 사이에 散在된 과잉노동의 부분들로 구성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漫性的 과잉노동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인가를 정확히 결정할 수가 없다. 그 크기는 農家家計샘플을 연구하는 직접적 방법에 기초를 둔 개별적 微視的 조사를 통해서만이 결정될 수 있다.」(p. 138) 이 연구의 요점은 1954년 이후 그리스농업에서는 「潛在失業」이 없다는 것이다.

4) 印度에 있어서의 M. Paglin의 研究

마지막으로 「潛在失業」이 존재하는 전형적인 나라라고 흔히들 들먹여지는 印度에 관한 연구를 들어보자. 1965년에 M. Paglin[15]은 「過剩農業勞動과 經濟發展」이란 논문을 발표하면서 인도에는 「潛在失業」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10에이커 이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노동投入이 과소하며 노동이 농업으로부터 流出될 것이 아니라 농업자체내에 노동력吸收의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였다.

Paglin 이 이용한 자료는 마드라스, 우타·프래더쉬, 마드히야·프래더쉬, 西벤갈, 봄베

이와 폰자브 등 6개의 印度主要穀物栽培地域에 걸쳐서 2,962개의 샘플農家를 포괄하는 1956~1957년간의 「농가경영연구」이다. 이 조사는 훈련을 받은 현지 통계技術者에 의하여 지도되고 日計簿에 매일 농가가 필요사항을 기장하는 방식을 통하여 획득된 것이다. 그는 過剩勞動을 「(두 가지 範疇에 있어서) 노동은 產出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년 내내 제거시킬 수 있는 (1) 일하나 生産高에 보탬이 되지 않는 노동(「潛在失業」) 혹은 (2) 漫性的으로 실업된 노동」(p. 816)으로 규정하였다. 노동생산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線型回歸方程式과 커비리니어(curvilinear) 함수를 이용하였다. 윗타·프래더쉬, 마드라스, 西벤갈, 폰자브 등 5개지역에 대한 1,096개의 샘플농가를 가지고 총產出高와 비용A[=총費用-(지대+이윤)] 간의 投入-產出함수를 계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線型回歸方程式은 $Y=65.4+.908X$ ($Y=$ 產出高, $X=$ 投入)이고 상관계수는 91이다. 產出高와 投入간의 기본적 관계는 커비리니어함수 $Y=-276+223\log X$ 가 훨씬 잘 나타내어 주는데 이 함수는 상관계수를 94까지 높혀 주고 따라서 線型方程式은 83%의 產出高의 변동을 나타내는데 반하여 88%의 產出高變動을 나타내 준다. 따라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두 개 群의 費用資料가 시장임금으로 평가된 모든 환산된 가족노동에 대하여 완전하고 주의깊은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投入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흔히들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족노동의 많은 부분의 限界生産力이 0이라면 投入과 產出間에 그렇게 높은 相關關係가 결과한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다. 사실 이전에 아주 한정된 약간의 연구에 있어서 에이커당 投入과 產出間的 상상된 상관관계의 결핍이 0의 限界生産力을 갖는 농업노동의 절대적 과잉을 가정하는 광범한 문헌의 기초로 이용되었던 것이다.」(p. 819)

위에서 「潛在失業」의 존재여부에 대한 몇가지의 事例연구를 들어보았다. 이 외에 이 문제에 관한 여러가지의 事例연구가 있으나 극히 최근의 研究로서 J. S. Uppal[16]의 研究와 D. R. Campbell[17]의 Uppal에 대한 반박이 있다. Campbell은 Uppal의 계산상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Uppal이 제시한 자료를 이용하여 후자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인도의 폰자브에는 「潛在失業」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의 평균한계생산성은 농지구모가 적어질수록 커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3. 「潛在失業」의 概念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潛在失業」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서 약간씩 뉴앙스를 달리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 한국에 있어서 「潛在失業」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기 이전에 우

리의 作業假說로서 우리나라를대로의 「潛在失業」概念을 정립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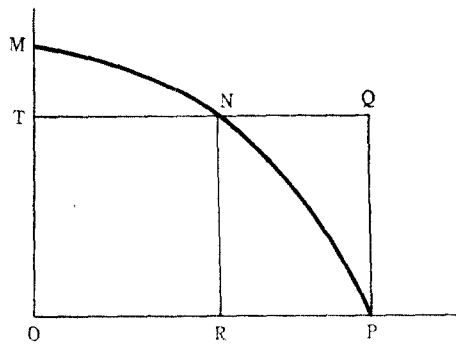
한 개념의 重要性은 확실히 그 개념이 봉사하는 목적에 의거하여 검토될 수 있는 것이다. 古典學派에 있어서는 人口成長의 압력과 수확체감의 법칙이 기술적 진보가 걸여된 어느 경제를 停滯상태나 賃金을 生存水準으로 억압할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였지만 「潛在失業」의 개념과 같은 것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潛在失業」의 개념은 경제개발이론에서 발전된 전혀 새로운 分析道具이며 저개발경제의 분석을 위하여 만들어진 전혀 새로운 개념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저개발국의 農業經濟는 들어난 실업에 의해서보다도 僞裝된 실업에 의하여 크게 특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潛在失業」이란 단순한 말로 표현하면 생산성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명목적인 고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潛在失業」理論의 주장자들은 한 발자욱 더 들어가서 이 개념에 몇개의 특징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그것은 가족노동경제와 가족노동에 주로 의존하는 농업경제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被傭노동에 주로 의존하는 資本主義的 경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그것은 노동의 限界生産性이 0이거나 -이며 그러므로 현재의 기술적 상태하에 있어서까지도 노동력의 일부분을 產出高를 감소시키지 않고 유출시킬 수 있는 경제상태를 지칭한다. (3) 그것은 自家傭傭이 自家勞賃을 市場勞賃보다 낮추는데까지 진행되는 경제상태를 가르킨다.

여기서 우리는 勞動時間이라기보다 차라리 產出高가 고용의 지표로써 들어진다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자가에 고용된 사람에게 일년에 그의 고용일수나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물어 보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며 차라리 그의 生産力이 컸던가 작았던가 혹은 그의 純所得이 그로 하여금 그 직업에 머물러 있게 하기에 충분한가 충분치 않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임금노동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생산성이나 소득이 고용시간보다도 그들의 경제상태를 보다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주로 자기노동이나 가족노동을 가지고 그 所有者에 의하여 경영되는 農家經濟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家族勞動에 의하여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 순수익이 관계시장에서 지배되고 있는 賃金率과 비교해서 어떠한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분명히 自家勞賃과 市場勞賃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純收益이란 產出高로부터 市場勞賃으로 평가된 家族勞動의 가치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차감하여 얻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純收益은 바로 自家勞賃인 것이다.

「潛在失業」의 이론적 전제는 저개발농업경제에 있어서 自家勞賃이 市場勞賃보다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勞動의 雇傭이 이윤극대화라는 자본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었을 때에는 고용이 현행임금율과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均衡되는 점까지 진행될 것이다. 剩餘는 평균노임비를 넘는 생산물의 초과분으로 얻어지게 되며, 이것은 주로 다른 어떠한 投入과 마찬가지로 수익체감의 법칙에 종속되는 限界單位 이전의 각 노동단위 때문에 임금비를 초과하는 노동생산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농업은 賃金支拂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을 0의 限界生産性에 이를 때까지 사용한다고 가정되어 있다. 제1도는 이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다. [18]



제1도가 있어서 횡축은 勞動量을 나타내고, 종축은 노동의 限界生産物을 나타내며 MP 곡선은 노동고용량의 상이한 수준에서 한계생산성을 나타낸다. OP는 총가용가족노동량이다. OT가 임금율일때 임금노동을 사용하는 농가는 OR만큼의 노동량을 고용하는 것이 가장 이롭다. 왜 그러냐하면, 만약 그 농가가 고용을 P점까지 늘린다면, 생산은 극대화 될 것이지만 반면에 NRP만큼의 生産의 增加를 위하여 생산물 MORN에서 발생한 利潤 MNT를 감소시키는 NQP만큼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家族勞動만을 사용하는 농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賃金支拂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고용을 OR에 제한할 것이 아니라 OP까지 증대시키는 것이 보다 이익이 될 것이다. 그 농가가 얻는 平均자가노임은 $MNPO/OP$ 이다. $MNPO/OP$ 가 시장노임 OT보다 높을 것인가 낮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NQP가 MNT보다 작은가 큰가에 달려 있다.

시장노임 OT가 낮으면 낮을수록 NQP는 MNT보다 작을 것이고 자가노임 $MNPO/OP$ 는 시장노임 $OPQT/OP$ 보다 높을 것이다. 시장임금 OT가 높으면 높을수록 NQP는 MNP보다 클 것이고 자가임금 $MNPO/OP$ 는 시장임금 $OPQT/OP$ 보다 낮을 것이다. 均衡

狀態에 있어서 시장임금은 고용된 노동의 限界生産性과 같아질 것이다.

노동의 限界生産性은 雇傭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그러므로 雇傭主는 低賃金率에서 보다 많은 양의 노동을 고용할 것이다. 그리하여 市場賃金率이 고용량의 증대에 따라 계속 떨어질 때 自家賃金이 市場賃金보다 높아지기 시작하는 點이 나타날 것이다. 최근에 假說的 0의 限界生産力과 +賃金率의 병존상태에 대하여 상당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논쟁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대로 이 논쟁의 해결방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市場賃金은 0이거나 0에 가까운 노동의 限界生産力에 따라서 0에까지 떨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가노임이 시장노임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저개발국에 있어서의 市場勞賃은 自家勞賃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으며 市場勞賃水準이 자가 노임수준과 비슷한 크기에서 머문다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潛在失業」의 기본적 假說을 우리나라대로 간명하게 살펴보았다. 그것은 (1) 농업에 있어서 노동의 限界生産力이 0이거나 -이고 (2) 자가노동의 平均勞賃이 市場勞賃보다 낮은 상태에 있고 (3) 다른 모든 조건을 현재대로 두었을 때에도 產出高를 감소시키지 않고 農業勞動의 일부를 타목적에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潛在失業」의 이론에 있어서 0의 한계생산력假說과 시장노임과 자가노임간의 이 假說的 관계의 妥當性 與否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전제를 두어야 한다.

(1) 농업노동의 일부분이 농업 이외의 타생산부문에 轉用되었을 때와 바로 그 직전과 다른 모든 조건이 같아야 한다. 만약 다른 조건이 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產出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농업노동의 일부분을 타용도에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말한다면 다른 조건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 產出高를 감소시키지 않고 타용도에 전용될 수 있는 勞動量도 변동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서 「潛在失業」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조건이 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潛在失業」의 有無를 논한다면 그 理論은 그 이론이 갖고 있는 論理 그 자체 때문에 「潛在失業」의 존재가 현실적 資料에 의하여 증명될 수도 있고 증명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2) 「潛在失業」의 측정이 가능하려면 실제로 농업생산에 투하된 노동의 限界生産力과 報酬수준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만약에 農業生産에 투하되지 아니한 노동까지도 합하여 다시 말하면 가족의 勞動能力과 產出高와의 관계에서 潛在失業의 有無를 측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非論理와 非現實性이 성립한다. 우선 가족의 노동능력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소농경제에 있어서 가족노동은 비단 농업노동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의 가사에도 종사하며, 복잡한 社會關係 속에서 다양한 사회생활에도 勞動可能時間의 일부분을 바쳐야 한다. 소농의 생활은 이와 같이 복잡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려는 것은 소농의 생활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활동에 드는 시간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흔히들 가족의 노동능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농의 가족構成員은 한정된 家事노동과 休日 등을 빼고는 농업노동에 종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의 勞動能力과 產出高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家族의 勞動能力과 產出高를 바탕으로 노동의 限界生産力을 계산하는 것은 非論理的이다. 농업노동에 투하되지 않는 勞動과 產出高 사이에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는가? 실령 가족의 勞動能力과 產出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우연한 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엄격히 「潛在失業」을 측정함에 있어서 農業生産에 투하된 노동과 產出高의 관계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IV. 雇傭과 勞動生産性

여기서 우리는 「潛在失業」의 이론에 있어서의 0의 한계노동생산력 假說과 시장노임수준과 자가노임수준과의 假說的 關係가 한국의 구체적인 統計資料에 의하여 실증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로 한다. 0의 한계노동생산력은 耕地面積과 資本供給이 일정한데 노동을 계속 투하함으로써 限界單位의 勞動生産力이 점점 체감하여 0 혹은 -에까지 이른다는 것이며 시장임금수준과 자가임금수준과의 假說的 關係는 자가임금수준이 시장임금수준보다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인 한국의 통계자료분석에 의하여 얻은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가설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耕作規模別投入, 產出高, 勞動生産性 및 賃金水準등의 제관계에서 명백히 나타나게 된다.

1. 耕作規模와 段當產出高

農林部の 『농가경제조사 및 농산물생산비조사 결과보고』는 경작규모별 段當산출고를 나타내주고 있다. 우리가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놀랄만한 결과중의 하나는 경작규모와 段當산출고와의 관계이다. <표3>은 4개년의 段當산출고를 경지규모별로 표시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段當平均산출고는 경지규모가 작을수록 높고 그것이 클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4개년간에 아주 규칙적이다. 즉 段當平均산출고와 경지규모와는 逆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것은 우연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양자간에 위와 같은 관계가 있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만약 위의 관계가 우연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우리는 토지의 肥沃度가 그 원인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다. 경지규모와 토지의 肥沃度간에 逆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의심해 볼 수 있다. 土地改良의 결과가 아닌 토지의 自然的 비옥도는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며 흔히들 段當生産性和 혼돈하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을 써서 토지의 비옥도가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밖에 없다. 첫째 이 자료의 표본지역은 각 지역내에 있어서의 일반적 농업조건에 대하여 상당히 동질적이며, 한국농업의 전영역에 걸쳐있으므로 매개의 標本마다 경지규모가 큰 것이 경지규모가 작은 것보다 肥沃度가 낮은 토지를 가지도록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한국에 있어서는 논이 밭보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비옥도가 높으며 이 조사자료에 의하면 경지규모가 클수록 논 비율이 높고 밭 비율이 낮으며 경지규모가 작을수록 밭 비율이 높고 논 비율이 낮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지규모와 단당평균산출고와의 逆의 상관관계가 토지의 비옥도 차이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토지의 비옥도를 경지규모별 단당평균산출고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그 產出高의 差異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보다 중요한 전략적 변수를 발견할 수 있다. 즉 경지규모별 노동 및 資本投入의 差異가 산출고變動의 대부분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地味의 차이보다도 차라리 追加的 投入이 단당평균산출고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그리고 <표 4>에서 우리는 4개년에 있어서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가 경지규모가 큰 농가보다 일률적으로 耕地利用率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投入은 총생산비에서 농지임차료와 자기자본용역비를 뺀 것이다. 그러므로 이 투입은 총생산비를 나타내주지 못한다는 결점이 있으나 아무리 숙련된 統計調查專門家라고 하더라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自己土地賃借料 같은 內給費의 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내급비가 총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는 하나, 作物別 평가액이 경지규모의 크기에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대체로 일정하며 產出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投入을 고려할 때 제거되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投入 A는 지불임차료를 제외한 모든 화폐적 지출과 自給原料의 평가액이다. 投入 B는 勞賃費이다. 노임비는 支拂노임과 自家노동평가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가노동평가는 경지규모별 평균지불임금으로 평가되었다.

<표 3>과 <표 4>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

<표 3>

規模別段階投入과 產出

(단위 : 원)

規 模 (町)	1 9 6 8				1 9 6 9			
	投 入			產 出	投 入			產 出
	計	A	B		計	A	B	
0.1-0.5	10,408	3,228	7,180	22,044	13,469	3,501	9,968	26,714
0.5-1.0	9,669	2,802	6,867	19,040	11,402	2,973	8,429	22,901
1.0-1.5	8,045	2,510	5,535	17,432	9,342	2,781	6,561	21,449
1.5-2.0	7,229	2,809	4,420	17,064	8,735	3,017	5,718	19,447
2.0-	6,313	2,331	3,982	15,259	8,183	2,991	5,192	19,476

規 模 (町)	1 9 7 0				1 9 7 1			
	投 入			產 出	投 入			產 出
	計	A	B		計	A	B	
0.1-0.5	15,259	4,244	11,015	31,164	18,090	4,742	13,949	42,863
0.5-1.5	12,776	3,572	9,204	26,251	15,756	4,673	11,083	38,422
1.0-1.5	12,024	3,289	8,735	24,928	15,429	3,990	11,439	36,293
1.5-2.0	9,915	3,471	6,444	24,230	12,376	4,332	8,044	33,032
2.0-	9,433	3,288	6,145	21,894	11,733	3,643	8,090	31,135

자료 : 農林部, 『農家經濟調査 및 農產物生産費調査 結果報告』(1969-1972)

주 : A=(農業支出+減價償却費)-(農地賃借料+支拂勞賃+在庫資産增加)

B=勞賃費(支拂勞賃+自家勞動評價額)

<표 4>

規模別 耕地利用率

(단위 : %)

規 模 (町)	1 9 6 8			1 9 6 9			1 9 7 0			1 9 7 1		
	計	畓	田	計	畓	田	計	畓	田	計	畓	田
0.1-0.5	189.3	202.4	176.4	177.7	164.9	192.6	185.3	169.3	202.4	178.3	168.3	190.3
0.5-1.0	167.1	165.1	169.6	154.8	146.7	166.8	160.9	150.6	177.9	159.6	149.1	177.7
1.0-1.5	151.5	139.6	168.2	140.5	132.3	154.2	145.2	131.9	166.0	135.6	126.3	151.1
1.5-2.0	136.1	131.0	143.4	123.6	117.5	136.3	129.6	117.7	151.9	134.0	124.1	151.6
2.0-	125.3	112.6	145.6	112.6	103.9	133.4	111.9	99.6	137.8	109.2	99.1	128.2
平 均	150.1	142.5	160.4	138.6	128.4	155.4	142.7	129.6	165.3	139.9	129.3	158.0

자료 : 農林部, 『農家經濟調査 및 農產物生産費調査 結果報告』(1969-1972)

일수록 경지규모가 큰 농가보다 資本과 勞動을 많이 투하하며 耕地利用率이 높다. 후자에 있어서보다 전자에 있어서 단당평균산출고가 높은 것은 資本, 勞動 등 土地를 제외한 모든 生産要素를 후자에 있어서보다 전자에 있어서 보다 많이 투하하기 때문이다. 『潛在失業』의 이론에서 명확히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흔히들 상정하는 일정한 土地와 資本을 가지고 勞動만이 계속 추가적으로 투하된다고 하는 생각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이다. 아무리 작은 경지면적을 갖춘 농가에서도 노동만이 계속 追加적으로 투하되는 경향은 없

으며 모든 生産要素가 그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같이 추가적으로 투하되고 있다.

2. 限界勞動生産力과 「剩餘」勞動

일반적으로 「潛在失業」假說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개발국의 농업에 있어서는 投入과 產出간에 相關關係가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또 그러한 증거들을 많이 제시하여 왔다. 投入과 產出간에 相關關係가 결여되는 이유로서 그들은 產出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 0의 限界勞動生産力을 갖는 노동의 投入을 들었다. 농업에 있어서 노동의 限界生産력이 0 이라면 古典派 經濟學으로부터 現代經濟理論에 이르기까지 임금은 노동의 限界生産力과 일치한다는 假說에 따라 농촌에 있어서의 賃金도 당연히 0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아무리 저개발된 경제에 있어서도 賃金은 항상 +이며, 이러한 현실이 그들의 이론과 모순없이 설명되려면 潛在失業의 이론은 資本主義經濟와는 다른 非資本主義經濟에서만 지배하는 독특한 經濟原理를 발견하여야 하였다. 이것을 설명하는 理論이 바로 시장 임금수준은 가족노동의 평균임금률에 의하여 결정되며 노동의 限界生産력이 0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하여 그러한 노동을 고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론이다.

〈표 3〉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는 投入과 產出간에 대단히 긴밀한 相關關係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일반적으로 「潛在失業」이론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勞動의 限界生産력이 0이라면 投入과 產出間에 이와 같이 긴밀한 相關關係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제시한 「潛在失業」에 대한 경험적 研究중에는 投入과 產出간에 긴밀한 相關關係가 없다는 것도 있었고 있다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여 두어야 할 것은 그들간에 相關關係가 없다고 주장하는 研究들은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경험적 資料들이 한결같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제시해 줄 뿐이며 그들간에 긴밀한 相關關係가 있다고 주장하는 研究들은 그것이 基礎하고 있는 경험적 資料들이 아주 완전하고 주의깊게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勞動投入의 상당한 부분이 0의 限界生産物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음미하여 보자. 「潛在失業」의 假定은 가장 非生産的인 노동자들은 產出高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고 農業으로부터 流出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한 勞動者가 어디에서 발견될 것 같은가? 아마 中農과 大農에서는 그들이 상대적으로 노동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0의 限界生産力을 가진 노동이 없을 것이고 더구나 그들은 상당량의 雇傭勞動을 사용하고 있다. 「潛在失業」은 段當勞動投入이 높고 가족노동에 보다 크게 의존하는 小農에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과 〈표 4〉에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小農이 집약

적으로 경작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 資料는 또한 자본과 노동의 追加的 投入을 통한 보다 集約的인 경작은 追加的 產出을 가져온다는 것도 명백히 해 주고 있다.

그러나 「潛在失業」 이론의 주장자들은 그만한 정도의 段當산출고의 증가는 小農에서 勞動의 상당한 부분을 제거하더라도 획득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小農에서 勞動-資本의 투입비율이 大農에 있어서의 그것보다 훨씬 높다면 「潛在失業」假說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 5>에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가정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다. 投入에 대한 가족노동과 고용노동의 비율은 연도와 경작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안정적이며 大農에서 보다는 小農에서 다소 노동의 투입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10% 포인트 미만이다. 이 정도의 勞動/資本의 투입비율의 차이를 가지고 小農에 잉여노동이 만성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小農에서는 토지節約的 기술이 자본과 노동이 토지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이 광범하게 자본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다. 小農은 가족노동뿐만이 아니고 비료, 경우, 농약 등 資本도 大農에 비하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小農의 경우에 있어서 大農의 경우에 있어서보다 耕地利用率이 높은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명백히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小農과 大農에 있어서 農業技術이 기본적으로 유사하다면 小農에 있어서의 노동도 大農에 있어서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農業生産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본질적으로 중요한 生産要素이며 따라서 小農에 있어서의 보다 많은 勞動投入이 「潛在失業」을 나타낸다고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潛在失業」이론의 또 한 가지 論理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過剩인구를 갖고 있는 저개발경제에 있어서는 耕作規模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가족노동을 生産的으로 고용하기에는 토지가 충분치 않으며 따라서 만성적 실업이나 「潛在失業」이 결과한다는 것이다. 물론 가족농업 밖에서 고용기회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潛在失業」理論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농업에 있어서 그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표 5> 規模別 段當投入에 대한 勞動投入比 (단위 : %)

規 模(町)	1968	1969	1970	1971
0.1-0.5	69.0	74.0	72.2	77.1
0.5-1.0	71.0	73.9	72.0	70.3
1.0-1.5	66.8	70.2	72.6	74.1
1.5-2.0	61.1	65.5	65.0	65.0
2.0-	63.1	63.4	65.1	69.0

자료 : 農林部, 『農家經濟調査 및 農產物生産費調査 結果報告』(1969-1972)

<표 6>

規模別 段當投下勞動과 雇傭勞動比

規 模(町)	1968		1969		1970		1971	
	投下勞動 (日)	雇傭勞動 (%)	投下勞動 (日)	雇傭勞動 (%)	投下勞動 (日)	雇傭勞動 (%)	投下勞動 (日)	雇傭勞動 (%)
0.1-0.5	31.49	12.6	33.45	11.7	32.02	12.1	32.14	10.2
0.5-1.0	28.03	11.6	26.34	11.1	25.71	12.1	26.77	11.5
1.0-1.5	22.87	16.8	22.78	14.8	23.80	12.7	23.25	11.2
1.5-2.0	19.82	25.6	18.87	26.7	19.01	21.0	19.43	20.3
2.0-	16.73	41.2	16.38	37.7	15.96	32.8	16.31	29.7

자료 : 農林部, 『農家經濟調査 및 農產物生産費調査 結果報告』(1969-1972)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통계는 가족농업 밖에서의 노동기회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표 6>에 제시된 자료는 「潛在失業」이론의 일반화에 또 하나의 의문을 던져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자료는 경작규모별 段當투하노동과 고용노동의 백분비를 나타내 주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경작규모가 큰 농가가 경작규모가 적은 농가보다 임금노동이용율이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아무리 작은 경작규모의 농가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고용노동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경작규모가 작은 농가라 하더라도 가족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고용노동을 사용한다는 것은 의미없는 일일 것이다. 대부분의 經濟學者들은 임금노동의 존재 그 자체가 「潛在失業」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潛在失業」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0의 限界勞動生産力과 +賃金率의 병존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 임금을 지불하고 0의 한계생산력을 가진 노동을 고용하는 이유는 「社會的 및 法律的 壓迫」이라든지, 노동자의 體力을 감퇴시키지 않는 것이 封建的 領主의 利益이 된다는지 하는 따위이다. 그러나 임금노동자가 상당히 產出高에 기여하고 雇傭主가 임금노동자를 사회적 혹은 법률적 압박 때문이 아니라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고용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는 현재의 資料에 의거하는 한 그러한 설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제 추가적 노동의 限界生産力을 보기로 하자. <표 7>은 경지규모간의 노동平均限界生産力을 나타내 주고 있다. 노동의 평균한계생산력은 연도에 따라 그리고 경지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상당히 불규칙적이다. 우리는 이 자료에서 언뜻 보아 하나의 의문스런 결과를 알게 된다. 즉 경작규모가 큰 농가에 있어서보다도 경작규모가 작은 농가에서 平均限界生産力이 높다. 어떠한 원인 때문에 언뜻 보아 경제이론의 一般原理와 모순되는 듯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일까? 지금 당장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하여 해답을 줄 수 없으나 여기

서 계산된 平均限界生産力이 한 作物의 그것이 아니고 다수의 作物과 작물의 農業生産의 合計에서 그것이 계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또 이 平均限界生産物 속에는 추가적인 노동의 생산물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자본과 토지의 생산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의 平均限界生産力이 그것이 큰 농가의 그것보다 반드시 낮아야 된다는 법칙도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하여간 우리가 이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명백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969년의 예외적인 경작규모 2.0 이상과 1.5-2.0 사이의 勞動의 平均限界生産物을 제외하고는 각 연도와 각 계층간에 있어서 勞動의 平均限界生産物은 +이다. 이 자료는 흔히들 「潛在失業」이론에서 주장되는 0 혹은 -의 勞動限界生産力을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潛在失業」의 한 가지 假說이 근거없는 論理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표 7>

規模別 段當 勞動平均限界生産物

規 模 (町)	1 9 6 8					1 9 6 9				
	產出高 (원)	限界產 出 高 (원)	勞 動 投 下 量 (日)	限界勞 動 投 下 量 (日)	勞動平均 限界生産 物 (원)	產出高 (원)	限界產 出 高 (원)	勞 動 投 下 量 (日)	限界勞 動 投 下 量 (日)	勞動平均 限界生産 物 (원)
2.0—	15,259		16.73			19,476		16.38		
		1,805		3.09	584		-2.9		2.49	-12
1.5—2.0	17,064		19.82			19,447		18.87		
		368		3.07	120		2,002		3.91	512
1.0—1.5	17,432		22.89			21,449		22.78		
		1,608		5.14	313		1,452		3.56	408
0.5—1.0	19,040		28.03			22,901		26.34		
		3,004		3.46	868		3,813		7.11	536
0.1—0.5	22,044		31.49			26,714		33.45		
規 模 (町)	1 9 7 0					1 9 7 1				
	產出高 (원)	限界產 出 高 (원)	勞 動 投 下 量 (日)	限界勞 動 投 下 量 (日)	勞動平均 限界生産 物 (원)	產出高 (원)	限界產 出 高 (원)	勞 動 投 下 量 (日)	限界勞 動 投 下 量 (日)	勞動平均 限界生産 物 (원)
2.0—	21,894		15.96			31,135		16.31		
		2,336		3.05	766		1,897		3.12	608
1.5—2.0	24,230		19.01			33,032		19.43		
		698		4.79	146		3,261		3.82	854
1.0—1.5	24,928		23.80			36,293		23.25		
		1,323		1.91	693		2,129		3.52	605
0.5—1.0	26,251		25.71			38,422		26.77		
		4,913		6.31	779		4,441		5.37	827
0.1—0.5	31,164		32.02			42,863		32.14		

자료 : 農林部, 『農家經濟調査 및 農產物生産費調査 結果報告』(1969~1972)

3. 勞動生産力과 賃金水準

「潛在失業」이론의 또 하나의 주장은 자가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한국에 있어서 「潛在失業」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自家賃金率과 市場賃金率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간접적인 방법을 원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경지규모별 勞動生産性을 고찰하고, 생산비조사가 행해져 있는 쌀, 보리, 쌀보리 및 밀에 대하여 자가노임 1원의 投入에 대한 收益을 계산해 본 후 경지규모에 따라서 농가의 自家勞賃 1원의 投入에 대한 收益을 추정하여 보기로 한다.

〈표 8〉 경작규모별 1段步當 산출고, 勞動투하량, 人當산출고 및 임금을 나타내고 있다. 段當산출고와 勞動투하량은 경작규모와 逆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경작규모에 따른 產出高의 변화와 勞動投下量의 변화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產出高는 경지규모가 제일 큰 농가에 비하여 경지규모가 제일 작은 농가가 40~50% 높은 반면 勞動투하량은 100% 정도 높다. 따라서 人當산출고에 있어서는 경지규모가 큰 농가가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 보다 40~50% 정도 높은 것이다. 이것은 產出高와 勞動투하량이 경지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대하여 人當산출고는 경지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꾸준히 낮아진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경지규모가 클수록 人當산출고는 높고 그것이 작을수록 人當산출고는 낮다. 그리고 人當산출고와 市場임금간의 관계를 보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리는 여기서 노임을 제외한 總生産費를 구할 수 없는 이상 自家임금율과 市場임금율간의 관계를 알 수 없지만 人當산출고가 제일 작은 경지규모에서도 市場賃金の 2~3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는 자가노동의 노임 1원당 收益을 쌀, 보리, 쌀보리 및 밀에 대하여 보여 주고 있다. 家族노동소득은 산출고에서 자가노임을 제외한 비료비, 방제비, 지불임금, 지대 등 總生産費를 빼서 얻은 것이고 自家勞賃은 자가노동투하량에 시장임금율을 곱하여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家族勞賃所得과 自家勞賃간의 관계는 자가임금율과 시장임금율과의 관계로 될 것이다.

쌀의 경우에 있어서 전국평균에 있어서 자가노임 1원당 收益은 연도에 따라서 2.49원으로 부터 3.87원에까지 그 변동이 심하다. 우리가 여기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변동이 노동의 物的 생산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米價와 시장임금율의 변동관계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미가와 시장임금율을 고정시킬 수 있다면 전국평균으로 자가임

<표 8>

規模別 段當 1人 1日當 產出高와 賃金率

(단위 : 원)

規模(町)	1 9 6 8				1 9 6 9			
	產 出 高	勞 動 投 下 量 (日)	人 當 產 出 高	賃 金	產 出 高	勞 動 投 下 量 (日)	人 當 產 出 高	賃 金
0.1—0.5	22,044	31.49	700	228	26,714	33.45	799	298
0.5—1.0	19,040	28.03	679	245	22,901	26.34	869	320
1.0—1.5	17,432	22.87	762	242	21,449	22.78	942	288
1.5—2.0	17,064	19.82	861	223	19,447	18.87	1,031	303
2.0—	15,259	16.73	912	238	19,476	16.38	1,189	317

規模(町)	1 9 7 0				1 9 7 1			
	產 出 高	勞 動 投 下 量 (日)	人 當 產 出 高	賃 金	產 出 高	勞 動 投 下 量 (日)	人 當 產 出 高	賃 金
0.1—0.5	31,164	32.02	973	344	42,863	32.14	1,334	347
0.5—1.0	26,251	25.71	1,021	358	38,422	26.77	1,435	414
1.0—1.5	24,928	23.80	1,047	367	36,293	23.25	1,561	492
1.5—2.0	24,230	19.01	1,275	339	33,032	19.43	1,700	419
2.0—	21,894	15.96	1,372	385	31,135	16.31	1,909	496

자료 : 農林部, 『農家經濟調査 및 農產物生産調査 結果報告』(1969~1972)

금 1원당 수익율은 3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추측된다. 경지규모별로 보면 경지규모가 큰 농가로부터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로 갈수록 수익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경지규모가 제일 큰 농가의 수익율은 4원 내외이며 경지규모가 제일 작은 농가의 수익율은 2원을 조금 상회한다.

쌀의 경우에 있어서 경지규모별 자가임금 1원당 收益率의 차이는 경지규모별 勞動生産力의 차이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1971년의 쌀의 생산에 있어서 段當生産費는 0.1—0.5 규모의 농가가 17,453원, 2.0— 규모의 농가가 17,289원이고, 勞賃費는 전자가 7,159원, 후자가 6,210원으로 총생산비의 투입이나 노동투입이 경지규모에 따라 차이가 아주 근소하다. 따라서 토지의 비옥도에 차이가 없는 이상 노동생산성에 차이를 가져올만한 다른 조건은 없다. 그러던 왜 경지규모에 따라서 自家賃金에 대한 收益率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 생산비통계를 세밀히 관찰한다면 그 이유가 자가노동 대 고용노동의 구성이 경지규모에 따라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971년의 쌀생산비에 있어서 自家賃金은 0.1—0.5규모의 농가가 5,322원이고, 2.0—규모의 농가가 3,481원이다. 즉 경지규모가 클수록 고용노동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 쌀의 경우에 있어서 自家賃金 1원당 收益率이 경지규모가 클수록 큰 이유는 고용노동에 의한 市場賃金을 초과하는 생산물이 自家賃金 1원에 대한 收益率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勞賃費(자가임금+지불임

금) 1원당 收益率이 이 사실을 더욱 명백히 해 주고 있다. 勞賃費 1원당 수익율은 전국평균이 3원이며 0.1—0.5규모의 농가가 2.8원, 0.5—1.0규모의 농가가 2.9원, 1.0—1.5규모의 농가가 3원, 1.5—2.0규모의 농가가 3원, 2.0—규모의 농가가 3.2원으로 각각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지규모가 제일 큰 농가에 있어서 自家賃金 1원에 대한 收益率이 경지규모가 제일 작은 농가의 그것보다 2배나 되지만 그것을 勞動生産性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며, 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리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라도 自家勞賃 1원에 대한 收益率이 2원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보리, 쌀보리 및 밀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국평균에 있어서 自家賃金 1원당 收益率은 연도별로 크게 변동하고 있다. 이 경우도 쌀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物的 勞動生産性에 그 변동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리 쌀보리 및 밀의 價格과 市場賃金率간의 변동관계에 그 원인이 있다. 위의 세 곡물에 있어서 경지규모별 自家賃金 1원당 수익율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경지규모에 따라서 수익율은 극히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다. 대체로 세 가지 곡물의 경우에 있어서 2.0—규모의 농가의 收益率이 가장 낮은데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곡물의 경우에 있어서 오직 2.0—규모의 농가가 雇傭勞動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하여간 이 세 가지 곡물은 모두 自家賃金 1원에 대한 收益率이 1원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자가임금을 커녕 자가임금을 뺀 생산비조차도 완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즉 이 세 가지 곡물의 생산에 있어서는 家族勞動의 平均生産力까지도 0거나 -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現象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다. 어느 穀物の 生産에 있어서 모든 家族勞動이 한푼의 수익도 얻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생산비까지도 손해를 본다는 상황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곡물의 경우에 있어서 自家勞賃 1원당 收益率은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 1원보다는 적지만 0원보다는 현저히 큰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作物別로 자가임금 1원에 대한 收益率을 보았다. 쌀의 경우 그것은 제일 작은 경지규모의 농가에 있어서도 적어도 2원 이상이며, 세 가지 곡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1원보다 작고 0보다는 현저히 크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우리는 농가의 農業收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지 않고서는 농가 전체적으로 自家賃金 1원당 收益率이 어떠한 것인가를 추측할 수는 없다.

〈표 10〉은 농가의 作物別 농업수입을 나타내 주고 있다. 〈표 10〉에 의하면 경지규모가 클수록 米穀收入의 비율이 높고 麥類收入과 農業外收入의 비율은 낮으며, 기타農作物收入의 비율은 경지규모가 작을수록 약간 높으나 대체로 일정하다. 그리고 미곡수입의 비율

<표 9>

自家勞賃 1원당 收益

(단위 : 원)

(1) 쌀

耕地規模 (町)	1968			1969			1970			1971		
	家族勞 動所得	自家勞賃	원當收益	家族勞 動所得	自家勞賃	원當收益	家族勞 動所得	自家勞賃	원當收益	家族勞 動所得	自家勞賃	원當收益
0.1-0.5	7,048	3,073	2.29	9,222	3,920	2.35	9,484	4,897	1.94	18,148	5,322	3.41
0.5-1.0	6,355	3,073	2.07	9,117	3,787	2.41	10,450	4,821	2.17	18,623	5,428	3.43
1.0-1.5	7,832	2,722	2.88	10,485	3,485	3.01	10,961	4,383	2.50	17,894	4,810	3.72
1.5-2.0	7,537	2,684	2.80	9,341	2,890	3.23	10,785	3,886	2.78	17,377	4,369	3.98
2.0-	6,779	1,768	3.83	8,428	2,099	4.02	9,238	3,017	3.06	17,320	3,481	4.98
平 均	7,069	2,591	2.73	9,312	3,149	2.96	10,275	4,122	2.49	17,875	4,623	3.87

(2) 보리

0.1-0.5	666	2,115	0.31	974	2,717	0.36	1,532	3,555	0.43	3,230	4,316	0.75
0.5-1.0	459	2,049	0.22	1,245	2,514	0.50	1,255	3,210	0.39	2,659	4,070	0.65
1.0-1.5	575	1,812	0.32	1,643	2,661	0.62	1,556	2,943	0.53	3,084	3,834	0.80
1.5-2.0	666	1,690	0.39	1,322	2,174	0.61	966	2,428	0.40	2,562	3,338	0.77
2.0-	253	1,344	0.19	768	1,953	0.39	-152	2,033	-0.07	2,075	3,272	0.63
平 均	471	1,875	0.25	1,257	2,500	0.50	1,147	2,985	0.38	2,760	3,873	0.71

(3) 쌀보리

0.1-0.5	278	1,763	0.16	614	2,070	0.30	798	3,104	0.26	1,653	4,226	0.39
0.5-1.0	414	1,596	0.26	1,180	1,972	0.60	1,326	2,841	0.47	2,388	3,814	0.63
1.0-1.5	647	1,284	0.50	908	1,827	0.50	1,230	2,714	0.45	2,296	3,864	0.59
1.5-2.0	-14	1,246	-0.01	530	1,716	0.31	790	2,572	0.31	2,152	3,307	0.65
2.0-	-15	914	-0.02	64	1,396	0.05	-411	2,510	-0.16	649	3,267	0.20
平 均	329	1,416	0.23	785	1,835	0.43	969	2,763	0.35	2,089	3,734	0.56

(4) 밀

0.1-0.5	750	2,640	0.28	-147	2,256	-0.07	1,110	3,839	0.29	1,064	4,561	0.23
0.5-1.0	366	2,248	0.16	909	2,776	0.33	471	3,385	0.14	1,140	4,353	0.26
1.0-1.5	497	1,950	0.25	844	2,803	0.30	747	3,115	0.24	1,203	3,863	0.31
1.5-2.0	592	1,707	0.35	566	2,330	0.24	968	2,985	0.32	1,789	4,100	0.44
2.0-	406	1,340	0.30	-82	2,480	-0.03	274	2,866	0.10	397	3,594	0.11
平 均	475	2,002	0.24	526	2,591	0.20	652	3,221	0.20	1,612	4,127	0.28

자료 : 農林部, 『農家經濟調査 및 農産物生産費調査 結果報告』(1969~1972)

주 : 家族勞動所得 = 產出高 - (生産費 - 自家勞賃)

은 전농가에서 절대적으로 큰 몫을 차지하는데 경지규모가 제일 작은 규모의 농가일지라도 40% 이상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위에서 우리는 쌀의 경우 自家賃金 1원당 收益率이 2원 이상이라는 것을 보았고 세 가지 곡물의 경우 그것이 1원보다는 작지만 0원보다는 크다는 것을 보았다. 기타 農作物과 農

作物外의 農業收入에 있어서 자가임금 1원당 收益率이 어떠한가는 잘 알 수 없지만 「農協」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1원 이상의 收益率을 갖는 作物은 드문 편이고 대체로 1원보다는 작지만 0원보다는 크다. 「農協」의 자료가 모든 作物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여기서 조사되지 않은 作物의 收益率이 어떠한지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도 다음과 같이는 말할 수 있겠다. 정상적인 경우에 作物이든 非作物이든간에 自家賃金 1원當 收益率은 1원보다는 작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0원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自家賃金 1원당 收益率이 2원 이상이 되는 가장 경지구모가 작은 농가에 있어서도 米穀收入이 전 農業收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상 한국농업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市場賃金率로 평가된 自家賃金を 보상받지 못하는 농가는 없을 것이다. 즉 한국농업에 있어서는 제일 작은 경지구모를 갖은 농가라 하더라도 최소한도 자가임금율이 시장임금율과 같든지 시장임금율보다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자가임금율이 시장임금율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潛在失業」假說중의 하나 역시 전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표 10> 耕地規模別 作物別 農業收入 (단위 : %)

規模(町)	1 9 6 8					1 9 6 9				
	計	米 穀	麥 類	其 他 農作物	農作物外	計	米 穀	麥 類	其 他 農作物	農作物外
0.1—0.5	100.0	41.1	18.1	24.3	16.5	100.0	47.2	17.7	22.4	12.7
0.5—1.0	100.0	51.1	15.0	20.2	13.7	100.0	52.4	14.8	21.5	11.3
1.0—1.5	100.0	55.3	12.6	21.5	10.6	100.0	58.3	11.0	22.1	8.6
1.5—2.0	100.0	60.3	10.3	19.6	9.9	100.0	65.2	8.2	27.7	8.6
2.0—	100.0	68.0	7.3	16.7	8.0	100.0	71.0	5.8	13.7	9.5

規模(町)	1 9 7 0					1 9 7 1				
	計	米 穀	麥 類	其 他 農作物	農作物外	計	米 穀	麥 類	其 他 農作物	農作物外
0.1—0.5	100.0	45.8	16.3	25.2	12.7	100.0	47.3	17.0	22.0	13.7
0.5—1.0	100.0	51.9	13.3	23.4	11.4	100.0	52.5	14.0	22.1	11.4
1.0—1.5	100.0	54.0	10.8	26.1	9.8	100.0	55.5	10.1	24.6	9.8
1.5—2.0	100.0	61.2	8.6	21.4	8.7	100.0	61.0	9.4	19.2	10.4
2.0—	100.0	67.7	5.1	19.3	7.8	100.0	69.3	4.6	19.7	6.4

자료 : 農林部, 『農家經濟調査 및 農產物生産費調査 結果報告』(1969~1972)

V. 農業勞動力人口와 農業勞動力의 移動

1. 農業勞動力人口

「潛在失業」의 假說이 韓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이 農業勞動力의 분

식을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土地에 대한 人口의 압력을 가지고 「潛在失業」假說의 타당성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상식적인 관찰이지 과학적인 관찰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潛在失業」假說의 타당성이 증명되려면 土地에 대한 人口의 압력 일반을 이야기해서는 안되며 그 理論이 전제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인구압력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야 한다. 즉 일정한 면적의 土地에 勞動이 계속 투하됨으로써 勞動의 限界生産力이 0거나 -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명하게도 한국의 農民은 경작규모가 작은 농가이거나 경작규모가 큰 농가이거나를 막론하고 경작면적당 노동량을 거의 같게 투하하고 있으며, 경작규모가 작아서 자가농업에 고용될 수 없는 勞動은 경작규모가 큰 농가의 임금노동으로 고용되든지, 都市으로 새로운 職業을 찾기 위하여 이동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지낼 뿐이지 그들의 限界勞動生産力이 0이거나 -가 될 때까지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농업에 있어서 家口員狀況은 <표 11>과 같다. 전국 농가호당 가구원수는 5.83인이며 耕地規模別로 보면 그것이 클수록 가구원수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가속도는 극히 느리며 제일 작은 耕地規模와 제일 큰 것 사이의 차는 2.34인으로서 경지규모별 가구원수의 차이는 경지규모의 차이와 비교할 때 대단히 작은 것이다. 농가가구원 중에서 生産年齡層을 15세로부터 65세까지 잡으면 전국 평균 可用勞動量은 가구원의 53%이며, 이것은 경지규모와는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다. 生産年齡階層의 年齡別 構成을 보면 <표 12>와 같다. 단위군이나 영암군을 막론하고 20~29세 階層의 生産年齡人口 比重이 대단히 낮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많은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이 계층에 있어서 農村으로부터 都市으로 人口移動이 심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표 11>

農家家口員狀況(1971)

(단위 : 人)

耕地規模 (町)	計(A)			14歲未滿 (B)	15—19歲 (C)	20—55歲 (D)	56—65歲 (D)	66歲以上	B+C+D/A
	計	男	女						
0.1—0.5	4.87	2.23	2.64	2.01	0.47	1.71	0.38	0.30	0.53
0.5—1.0	5.67	2.72	2.95	2.45	0.52	1.99	0.38	0.33	0.51
1.0—1.5	6.22	3.20	3.02	2.57	0.69	2.22	0.45	0.29	0.54
1.5—2.0	6.69	3.34	3.35	2.70	0.77	2.35	0.51	0.39	0.54
2.0—	7.21	3.61	3.60	2.82	0.94	2.62	0.50	0.36	0.56
全國平均	5.83	2.84	2.99	2.43	0.60	2.06	0.42	0.32	0.53

자료 : 農林部, 『農家經濟調査 및 農產物生産費調査 結果報告』(1972)

<표 12>

生産年齡階層의 年齡別 構成

단위 : 人

地 域	生産年齡階層人員數	14—19歲	20—29歲	30—39歲	40—49歲	50—59歲	60—64歲
군 위 군	344 (100.0)	61 (17.7)	57 (16.6)	69 (20.1)	67 (19.5)	69 (20.1)	21 (6.1)
영 암 군	361 (100.0)	72 (19.9)	68 (18.8)	76 (21.1)	71 (19.7)	47 (13.0)	27 (7.5)

이제 農業人口와 耕作面積間의 關係를 보기로 하자. 앞에서 우리는 戶當家口員數에 있어서는 경지규모의 대소에 따라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戶當耕作面積은 경지규모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家口員 1인當 耕作면적으로 나타내 보면 0.1—0.5가 201.07坪, 0.5—1.0이 392.62坪, 1.0—1.5가 588.67坪, 1.5—2.0이 773.11坪, 2.0 이상이 1,057.52坪으로 되어 있다. 제일 큰 규모의 1人當 耕作면적은 제일 작은 그것의 1人當 耕作면적에 비하여 5배가 되고 있다. 이것은 확실히 경작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土地에 대한 人口의 압력이 가중되어 가는 것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이러한 土地에 대한 人口의 壓力은 「潛在失業」假說이 말하는 그러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耕作면적이 작은 농가라고 해서 土地에 비해서 人口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家族勞動은 일하거나 앉거나 간에 먹기 때문에 무작정 일정한 土地에 限界勞動生産力이 0이거나 -가 될 때까지 勞動을 두하하는 것은 아니다. 段當勞動投下時間을 耕作규모별로 보면 0.1—0.5가 237.89시간, 0.5—1.0이 211.91시간, 1.0—1.5가 187.80시간, 1.5—2.0이 159.21시간, 2.0 이상이 139.35시간으로 각각 되어 있다. 제일 耕作규모가 작은 농가도 그것이 제일 큰 농가보다도 段當勞動投下量은 70.7% 밖에 높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한 作物을 재배하는데 耕作규모에 따라 이와 같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耕作규모가 작은 농가는 耕作규모가 큰 농가에 비하여 勞動의 利用度 뿐만이 아니라 土地의 利用度도 높이고 있다. 따라서 段當勞動投下量을 土地利用率로 나누어 보면 耕地利用面積當(耕地面積이 아니라는 데 주의하라) 投下勞動量은 0.1—0.5가 133.40시간, 0.5—1.0이 132.78시간, 1.0—1.5가 138.53시간, 1.5—2.0이 118.84시간, 2.0이상이 127.57시간으로 각각 되어 있다. 즉 耕作이용면적당 투하노동량은 규모에 따라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각 作物栽培에 있어서의 段當投下勞動量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쌀, 보리, 쌀보리, 밀에 있어서 段當勞動投下量이 耕作규모에 따라서 거의 같다는 것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段當勞動投下量은 耕作규모와 관계없이 作物의 種類와 그 재배방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경지규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韓國農業에서는 여러가지 作物의 栽培와 그 栽培方式이 경작규모와 관계없이 거의 같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따라서 경작규모와 경지이용율 바로 그것이 勞動力의 수요에 일정한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며, 경지규모가 작다고 해서 일정한 面積의 土地에 勞働을 무작정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潛在失業」假說의 주장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런지도 모른다.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土地利用率이 높다는 바로 그것이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0이거나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확실히 韓國에서는 쌀 등 몇가지 작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作物의 재배에 있어서 自家勞働에 대한 보상이 市場勞賃水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이러한 作物을 상대적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시해 둘 수 있다. 첫째, 어느 作物의 勞働이 限界勞働인가? 쌀생산에 투하된 노동인가? 보리생산에 투하된 노동인가? 그렇지 않으면 타작물에 투하된 노동인가? 둘째, 勞働의 限界生産力은 각 作物별로 따질 수 있는 문제인데 作物과 作物간에도 따질 수 있는 것인가? 셋째, 화폐로 표시된 노동생산력은 실물로 표시된 노동생산력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각국이 갖는 價格體系의 의미를 음미해보지 않고 作物間의 勞働生産力을 화폐적 노동생산력으로만 비교해 보는 것은 충분한가? 하여간 우리는 농업노동의 한계생산력을 作物別로가 아니고 作物과 作物間에서 따진다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作物別로만 따진다면 韓國農業에 있어서의 自家賃金率은 경작규모와는 관계없이 그리고 勞働의 限界生産力과도 관계없이 각 작물에 따라 市場賃金率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家口員數와 경작면적간의 관계는 段當 경작면적의 노동투하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段當 경작면적의 노동투하량은 작물에 따라 다르며 경작규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일정한 것이다. 따라서 한 作物에 대해서 보면 노동의 평균생산력이나 한계생산력이 경작규모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것이다. 아무리 우직스러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경지면적이 작은 농가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생산고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거나 감소시킨만큼 勞働을 많이 투하하지 않으며, 경작면적당 勞働의 수요는 작물의 종류와 재배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2. 農業勞動力의 雇傭

우리는 앞에서 戶當農業勞働量, 1人當 耕作面積 및 1段步의 耕作面積當 投下勞働量의 實態와 그들간의 상호관계를 보았다. 거기서 우리는 1人當 경지면적은 경지규모가 제일

큰 農家와 경지규모가 제일 작은 農家사이에 5배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段步의 경작 면적당 투하노동량은 그들간에 동일하였다는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이의 모순되는 사실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첫째, 우리는 자발적 및 비자발적 失業을 들 수 있고, 둘째, 賃勞動 등 농가간의 노동력교환을 생각할 수가 있으며, 셋째 명목상의 경영주와 실제 경작자가 분리되어 있는 雇只를 들 수 있다. 다시말하면 1人當 경지면적의 차이와 1段步의 경작면적당 투하노동력의 동일성간의 모순의 원인은 자발적 및 비자발적 失業과 노동력의 交換制度에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農業勞動力の 就業狀況과 交換制度에서 보기로 하자.

<표 13>은 家口員의 就業狀況을 나타내 주고 있다. 가구원중 전국평균에 있어서 營農從事者가 50.2%, 非營農從事者가 49.8%이며 非營農從事者중에는 無職者가 47.7%, 他職業從事者가 2.1%로 각각 되어 있다. 무직자는 학생, 군인, 가사종사자 및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실업자이며 타직업종사자는 공무원, 교사 및 상업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농종사자 중에는 自家勞動者가 49.4%이며 雇傭勞動者가 0.8%이다. 이것을 경작 규모별로 보면 영농종사자의 비율은 경작규모가 커질수록 약간씩 증가하며 비영농종사자의 비율은 경작규모가 작아질수록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증감의 크기는 아주 미소하다. 한편 고용노동은 경작규모가 커질수록 그 비중이 다소 커지며 타직업종사자는 경작규모가 작아질수록 그 비중이 조금씩 증대하나 양자의 절대적 비중은 아주 작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自家勞動, 雇傭勞動 및 他職業들에 대한 해석이다. 여기서 말하는 自家勞動은 자기경영의 농업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농업 및 비농업의 임금노동자가 될 수 있으며 雇傭勞動은 적어도 3個月 以上 계속하여 被傭되어 있는 勞動者이므로 雇傭勞動의 전부가 아니며 他職業도 또한 일년 내내 타직업에만 종사하는

<표 13>

家口員의 就業狀況(1971)

(단위 : 人)

耕地規模 (町)	家口員 (A)	營農從事者(B)			非營農從事者(C)			B/A(%)	C/A(%)
		計	自家勞動	雇傭勞動	計	他職業	無職		
0.1—0.5	4.87	2.35	2.34	0.01	2.52	0.18	2.34	48.3	51.7
0.5—1.0	5.67	2.76	2.75	0.01	2.91	0.13	2.78	48.7	51.3
1.0—1.5	6.22	3.22	3.21	0.01	3.00	0.10	2.90	51.8	48.2
1.5—2.0	6.69	3.44	3.39	0.05	3.25	0.14	3.11	51.4	48.6
2.0—	7.21	3.80	3.53	0.27	3.41	0.06	3.35	52.7	47.3
全國平均	5.83	2.92	2.88	0.04	2.91	0.13	2.78	50.2	49.8

자료 : 農林部, 『農家經濟調査 및 農產物生産費調査 結果報告』(1972)

자를 나타낼 뿐이다. 따라서 農村勞動者의 雇傭勞動이나 非農業勞動이 이 표에 나타나 있는 雇傭勞動이나 他職業에만 局限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표 14〉는 農業勞動力的 交換狀況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 표는 耕地規模가 畝作面積別로 되어 있고 계층간적이 앞의 통계와 다르기 때문에 앞의 통계와의 비교성이 낮으나 경지규모별에 따른 대체적 경향은 두 통계가 거의 일치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표에 따르면 농가간의 勞動力交換은 머슴, 품앗이, 품팔이 및 고지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머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앞 통계의 雇傭勞動에서 제외된 것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속에 1人當 경지면적의 차이와 1段步의 경작면적당 투하노동시간의 동일성간의 모순에 대한 대부분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다.

우선 머슴부터 살펴보면 173家 중에서 머슴을 보낸 가구수는 24가구 즉 전가구수의 13.9%가 다른 가구에 머슴을 보내고 있다. 이것을 경지규모별로 보면 0.0이 26.5%, 0.0—0.5가 16.7%, 0.5—1.0이 5.4%의 머슴을 다른 농가에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에서는 머슴을 보내고 경지규모가 큰 농가는 머슴을 데린다는 사실이 勞動力과 耕地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임에는 틀림없으나 이것은 앞의 통계에서 이미 雇傭勞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품앗이는 700명의 生産年齡人口가 일년간에 총 1,870일, 즉 1人當 2.67일을 하고 있다. 생산년령인구 중에서 약 절반이 영농종사자이므로 영농종사자 1人當 품앗이 일수는 5일이 약간 넘는 편이다. 이것을 경지규모별로 보면 0.0이 1.12일, 0.0—0.5가 2.85일, 0.5—1.0이 3.44일, 1.0—2.0이 2.69일, 2.0 이상 1.92일로 각각 되어 있다. 만약 품앗이 勞動力이 철저하게 노동대 노동의 교환이라면 노동력과 경지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힘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통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농촌의 일반적인 품앗이는 대체로 노동대 노동의 교환이나 흔히 들이 교환관계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반대급부로서 노동대신에 賃金을 받는다. 이 경우에 일반적인 경향은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에서보다 그것이 상대적으로 큰 농가에서 반대급부로 임금운 주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품앗이 노동도 勞動力과 耕地간의 모순을 완화하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품팔이는 700명의 생산년령인구가 일년간에 3,709일, 즉 1人當 5.30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영농종사자에 대해서 보면 1人當 일년간 10일이 조금 넘는 것이다. 경지규모별로 보면 0.0이 12.46일, 0.0—0.5가 7.37일, 0.5—1.0이 1.13일, 1.0—2.0이 0일, 2.0이상이 1.92일로 각각 되어 있다. 품팔이 노동일수는 밭의 경작규모가 0.5이하의 농가에서는 상당

히 많은데 이것은 노동력과 경지간의 모순을 조정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 같다. 영농종사자 1인당 0.0의 계층에서는 1개월, 0.0—0.5의 계층에서는 1/2개월이나 되는데 이것은 한국농업에 있어서의 계절적 실업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많은 勞動日數이다. 품팔이 노동을 많이 사는 농가는 경지규모가 큰 농가라는 것은 앞에서 든 段步當 투하노동량의 自・雇構成에서 명백히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雇只에 대해서 보면 고지를 먹는 총면적은 67,900평이며, 生産年齡人口 1人當 97평이 되는 셈이다. 이것을 계층별로 보면 0.0이 175.5평, 0.0—0.5가 133.4평, 0.5—1.0이 6.5평으로 각각 되어 있다. 그리고 고지를 준 총면적은 78,600평이며 生産年齡人口 1人當 112.3평이다. 이것을 계층별로 보면 2.0이상이 729.7평, 1.0—2.0이 260.8평, 0.5—1.0이 95.0평, 0.0—0.5가 25.5평으로 각각 되어 있다. 雇只制度는 勞動力과 耕地간의 모순을 완화하는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 雇只制度가 없다면 1人當 경지의 계층별 분배는 0.0이 0평, 0.0—0.5가 202.0평, 0.5—1.0이 461.4평, 1.0—2.0이 714.9평, 2.0 이상이 1,225.2평으로 각각 되는데 고지제도가 도입되면 그것은 0.0이 175.5평, 0.0—0.5가 309.9평, 0.5—1.0이 373.9평, 1.0—2.0이 454.1평, 2.0 이상이 495.5평으로 된다. 여기서 우리는 雇只制度가 얼마나 勞動力과 耕地간의 모순에 대한 강력한 조절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통계에서 의문시되는 점은 小作地의 貸借關係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小作地는 이미 畝의 경작면적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 지방에서는 小作制度 대신에 雇只制度가 행해지지도 모를 일이나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적극적으로 雇只制度가 이 地方만큼 널리 행해져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고지제도가 노동력과 경지간의 모순을 완화하는 강력한 힘이기 는 하나 전국적으로 볼 때 이 지방에서만끔의 강력한 조절력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우리는 農業勞動力의 交換制度의 分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급자족적인 가족노동에 의하여 영위되는 農業에서는 農業經營에 있어서 家族勞動이 지배적이며 고용노동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것은 흔히들 우리가 家族農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서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사고에 빠진 결과이다. 아무리 폐쇄된 독립자영의 자급자족적 농업에 있어서도 경지규모에 분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상 雇傭勞動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 그것이 비록 家族勞動의 중요성을 극복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지규모가 큰 농가의 중요한 수탈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農業勞動力의 수행은 自給自足的 經濟單位가 孤立・分散되어 있는 것만큼 分散的으로 遂行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한국농업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은 위

<표 14>

農業勞働力の 交換

耕地規模(町)	0.0	0.0—0.5	0.5—1.0	1.0—2.0	2.0—	計
區 分						
家 口 數	34	78	37	18	6	173
生 産 年 齡 人 口	98	302	161	102	37	700
머슴을 보낸 가구수 (家口當 %)	9 (26.5)	13 (16.7)	2 (5.4)	0 (0)	0 (0)	24 (13.9)
품 앗 이 日 數 (人當, 日)	110 (1.12)	861 (2.85)	554 (3.44)	274 (2.69)	71 (1.92)	1,870 (2.67)
품 팔 이 日 數 (人當, 日)	1,211 (12.46)	2,226 (7.37)	182 (1.13)	0 (0)	90 (2.43)	3,709 (5.30)
고지를머는면적(坪) (人當, 坪)	17,200 (175.5)	40,300 (133.4)	10,400 (6.5)	0 (0)	0 (0)	67,900 (97)
고지를 준 면적(坪) (人當, 坪)	0 (0)	7,700 (25.5)	15,300 (95.0)	26,600 (260.8)	27,000 (729.7)	78,600 (112.3)

자료: 丁炳休, 「韓國의 農業勞働에 관한 考察」, 『經濟論集』, 第Ⅵ卷 第2號, 1967年 6月.

주: 耕地規模는 戶當畓作面積임.

의 통계에서도 시사되어 있는 바와 같이 家族勞働이라고 해서 家族끼리만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家族과 家族사이에서 共同的이며, 協同體的으로 노동을 수행하며 흔히들 雇傭勞働이 하나의 作業隊를 형성하여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共同的 내지는 協同體的 勞働이 경작규모의 대소와는 관계없이 경작면적당 투하노동량을 같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며, 「潛在失業」理論이 전제하는 限界勞働의 현실적 중요성을 의미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農業勞働力の 移動

土地에 대한 증가하는 人口의 압력을 완화하는 또 하나의 安全瓣은 토지로부터의 農業 人口離脫이다. 토지로부터의 農業人口離脫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그 한계는 항상 농업 이외의 취업기회에 의하여 주어졌다. 토지로부터의 인구분리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상이한 해답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원인을 농업에 있어서 勞働生産力이 생존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형태의 착취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인가 하고 문제를 조금 추상적으로 단순화시킨다면 역사적으로 관찰할 때 우리는 후자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전자와 후자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후자가 전자의 원인일 수도 있다. 하여간 우리가 여기서 명백히 하려는 것은 「潛在失業」理論의 주장자들이 제시하는 0거나 혹은 -의 限界勞働生産力을 가지고 離農現象의 경제적 원인을 찾기는 힘든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관찰할 때 주된 離農層은 경지면적이 작은 농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들이 土地로부터 離脫되는 것은 그들의 限界勞動 生産性이 0이거나 -이기 때문은 아니다. 그들이 土地로부터 이탈되는 원인은 그들이 이 러저러한 지배자의 착취 때문에 도저히 생존을 유지할 수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農業에 서는 취업의 기회를 발견할 수 없거나 또는 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것보다도 보다 유리한 취업기회가 주어지거나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여간 우리는 土地에 대한 人口壓力이나 농업인구의 土地로부터의 이탈현상을 가지고 「潛在失業」假說의 정당성을 증명하 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표 15〉는 우리가 보충조사한 結果表이다. 이 結果表는 앞에서 제시한 통계와 조금씩 다 른 수치를 나타내 주고 있지만 계층간의 대체적 경향은 같다. 이 표가 보여 주는 農業勞動力의 移動現象은 다음과 같다. 군위군에 있어서나 영암군에 있어서 농가에 머물러 있는 生産年齡人口에 대한 別居者比率은 약 30%이다. 여기서의 別居者는 家口主와 독립해서 생활하나 독립가계를 이루지 못한 자들이다. 그리고 別居者는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0명중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생산년령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別居者가 생산연령인 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경지규모별로 보면 군위군에서는 0.1—0.5가 40.8%, 0.5—1.0이 29.8%, 1.0—1.5가 25.9%, 1.5—2.0이 16.7% 2.0이상이 0으로 각각 되어 있어 경지규모 가 작을수록 별거자 비중이 높고 경작규모가 클수록 별거자 비율이 낮으며 영암군에서는 0.1—0.5가 34.8%, 0.5—1.0이 28.8%, 1.0—1.5가 31.4%, 1.5—2.0이 33.4%, 2.0이상 이 16.4%로 각각 되어 있어 0.1—0.5에서 가장 높으며 0.5—2.0까지는 점점 증가하다가 2.0 이상에서 가장 낮다. 영암군에서의 별거자의 계층별 구성은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에 서 경지 규모가 큰 농가에서보다 보다 많은 별거자를 가질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조 금 어긋나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실은 앞서든 丁炳然 教授의 조사에서는 더욱 뚜렷이 나타 나 있다. 丁教授의 조사에 의하면 家族數에 대한 별거자의 비율은 전체평균이 16.8%이며 畝作規模別로 0.0이 18.7%, 0.0—0.5이 12.3%, 0.5—1.0이 10.8%, 1.0—2.0이 30.5%, 2.0 이상이 44.6%로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한 통계와 丁教授가 조사한 통계 사이 에는 큰 차이가 있다. 첫째 우리의 통계에서는 家族數에 대한 별거자의 비율이 13.6%인 데 대하여 丁教授의 통계에서는 16.8%이다. 둘째 우리의 통계에서는 경작규모에 따라 규 칙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체로 경작규모가 작을수록 별거자의 비율이 높은 데 대하 여 丁教授의 통계에서는 無畝作層을 제외하고 경작규모가 클수록 별거자의 비율도 높다. 두 統計간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선 조사의 기준, 시점 및 지역의 차이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지만 하여간 여기서 문제로 되어야 하는 것은 조사결과와

<표 15>

農 家 口 員 狀 況

(단위:人)

地 域	耕地規模 (町)	家口數	總家口 員數	別居者除外 14-64 歲者 數 (A)	別居者數 (B)	1家口當平 均家口員數	別居者除外 1家口當平 均家口員數	別居者除外 1家口當平 均家口員數 -64歲者數	B/A(%)
군	0.1—0.5	30	197	76	31	6.57	5.53	2.53	40.8
	0.5—1.0	52	351	171	51	6.75	5.77	3.29	29.8
위	1.0—1.5	22	176	85	22	8.00	7.00	3.86	25.9
	1.5—2.0	3	23	12	2	7.67	7.00	4.00	16.7
군	2.0—	0	0	0	0	0	0	0	0
	小計	107	747	344	106	6.98	5.99	3.21	30.8
영	0.1—0.5	18	108	46	16	6.00	5.11	2.52	34.8
	0.5—1.0	37	255	111	32	6.89	6.03	3.00	28.8
암	1.0—1.5	26	191	86	27	7.35	6.31	3.31	31.4
	1.5—2.0	16	118	57	19	7.38	6.19	3.56	33.4
군	2.0—	14	108	61	10	7.71	7.00	4.36	16.4
	小計	111	780	361	104	7.03	6.09	3.25	28.8

차이라기 보다는 해석의 차이이다. 丁教授는 別居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大農은 高等教育을 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都市로 진출할 기회가 많으나 「소농층에 있어서는 자가영농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족들이 다른 지방이나 도시로 이동하기 어려운 반면 고등교육을 받을 경제적 여력도 없기 때문에 소농층의 가족들은 본가와외의 別居誘因을 가장 적게 가진다고 생각된다」[19, pp. 19-20]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을 제기해 둘 필요가 있다. 農村人口의 都市에로의 移動이 高等教育에 의한 취업기회에 그 主要한 원인이 있는 것인가? 丁教授의 조사시점은 1966년인 것 같다. 당시에는 한국의 60年代 公營化가 농촌인구 이동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리라 생각되며 조사지역도 工業化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남 영광군의 2개 부락이다. 일반적으로 이농현상은 빈곤한 農民이 農村에서 생활수단을 얻지 못하여 도시로 流出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에서 工業成長이 지지부진하여 취업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農村에서 농민분화가 완만한 條件下에서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人口移動이 빈농계층에서보다도 경제적으로 비교적 부유하고 고등교육 등을 통하여 도시에서 일정한 취업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계층에서 활발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흥미있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어디까지나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극히 제한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조사가 제시하는 바에 의하면 이농현상의 일반적 경향은 빈농의 農村離脫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 통계는 앞의 통계와 조사시점이 다르고 즉 한국의 60년대 公營化가 농촌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기의

차이라든지 지역적인 특수성이라기보다 어디까지나 이농현상의 주류는 빈한한 農民의 빈곤에 의한 都市에로의 流出이라는 一般性인 것 같다.

〈표 16〉은 別居者의 연령구성과 직업을 나타내주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별거자의 연령구성은 210명중 단 2명을 제외하면 전부 생산연령인구이다. 그리고 그들을 10세 간격으로 갈라 보면 軍威郡에서는 15—24세가 68.9%, 25—34세가 23.6%이며, 靈岩郡에서는 15—24세가 48.0%이며, 25—34세가 29.8%로서 대부분이 청장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農業勞動力에 주는 영향은 지대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흔히들 농업노동의 과잉상태만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객관적 사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업노동의 연령별 구성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들어 볼 수 없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오히려 농업에 있어서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에서 들리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을 주의깊게 관찰한 일은 드물다. 별거자의 職業別 構成을 보면 아래와 같다. 군위군에서는 별거자가 전부 106명인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종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事務職은 9명 뿐이며,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 종사한다고 생각되는 販賣職・交通・遞信・生産工程従事者・單純勞務者・서어비스가 56명으로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學生・軍人은 28명이고 기타는 13명이다. 군위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보다 교육을 덜 받은 다시 말하면 부유한 농가라기보다 빈한한 농가에서 이농현상이 심하다는 것이 그 직업별 구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영암군에서는 별거자가 전부 104명인데 事務職이 13명, 販賣・生産工程従事者・單純勞務者・서어비스가 28명이며, 學生・軍人이 29명이고, 기타가 34명이다. 군위군에 비하여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업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약간 높기는 하나 그 직업을 명시할 수 없는 기타중의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역시 부유한 농가에서보다 빈한한 농가에서 이농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農業勞動力의 移動은 農業人口의 非農業人口로의 移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別居者 중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農業人口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많은 學生・軍人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別居者의 대부분은 이미 農業으로부터 떠나간 사람들이다. 이들이 生産年齡人口에 대하여 30%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農村社會도 이미 쇠퇴적인 社會가 아니라 勞動力의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사회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 이동의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社會에서 아무리 토지에 대한 인구의 압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限界勞働生産性이 0이거나 -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농업에 계속 머물러 뼈빠지게 일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潛在失業」理論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理論을 구성하고 論理的으로 아름다운 개발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虛構일 것으로 생각된다.

<표 16> 別 居 者 의 職 業 (단위 : 人)

地域	年 齡	合 計	事務職	販賣職	交通 遞信	生産工 從事者	單純 勞務	서어 비스	學生	軍人	其他
군 위	13세 이하	1(0.9)									1
	14세	2(1.9)				2					
	15—24세	73(68.9)	7	5	1	27	6	2	12	9	4
	25—34세	25(23.6)	2	3		6	1			7	6
	35—44세	3(2.8)		1		2					
	45—54세	2(1.8)									2
군 小 計	54세 이상	0									
	小 計	106(100.0)	9	9	1	37	7	2	12	16	13
영 암 군	13세 이하	1(1.0)							1		
	14세	2(1.9)				1					1
	15—24세	50(48.0)	3	2		14		1	12	4	14
	25—34세	31(29.8)	9			4	1		3	9	5
	35—44세	13(12.5)		3		1	1				8
	45—54세	2(1.9)	1								1
군 小 計	55세 이상	5(4.8)									5
	小 計	104(100.0)	13	5		20	2	1	16	13	34

V. 맺 는 말

앞에서 우리는 「潛在失業」의 理論的 基礎와 假說을 밝히고 이 이론에 입각한 經驗的 研究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개를 소개하였으며 韓國農業에 있어서의 勞動生産性, 實質賃金水準 및 雇傭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농업에 있어서는 「潛在失業」이 없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논증하였다」고 말한다고 해서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 「잠재실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資料의 제약성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한 자료의 신빙성과 자료출처의 다기성을 차지하더라도 우리의 논증이 문자 그대로 완전한 것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이 따른다. (1) 우리가 사용한 통계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이다. 「潛在失業」理論의 주장자들이 모든 농가에 잠재실업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평균치를 가지고 잠재실업의 유무를 실증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만약 「潛在失業」理論의 주장자들

이 평균치의 사용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위안을 받는다. 限界生産力이 0거나 -인 勞動이 工業에 있어서보다 農業에 있어서 많을지는 모르겠으나 「潛在失業」이 農業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또 그것이 農業을 지배하는 일반원 리도 아니다. (2) 우리는 農勞의 限界生産力을 경지규모별 投入勞動과 產出高間的 차이로 계산하였다. 즉 단일 경작단위에 대한 勞動의 限界生産力은 구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경기규모별 投入勞動과 產出高間的 차이로 勞動의 限界生産力을 계산할 때 추가적인 資本投入의 효과도 전혀 별도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조건은 살아있는 農業을 관찰할 때 피할 수 없는 제약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韓國에는 潛在失業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Charles H.C. Kao, Kurt R. Anshel, and Carl K. Eicher, "Disguised Unemployment in Agriculture: A Survey," *Agri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McGraw-Hill Seri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1964, pp.129-144.
2. R.S. Eckaus, "Factor Proportion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45, September, 1955 pp.539-565.
3. W. Arthur Lewis,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May, 1954, pp.139-192.
4. N. Georgescu-Roegen, "Economic Theory and Agrarian Economics," *Oxford Economic Papers*, Vol.12, February, 1963, pp.1-40.
5. H. Leibenstein, "The Theory of Underemployment in Backward Econom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65, April, 1967, pp.91-103.
6. H. Leibenstein, *Economic Backwardness and Economic Growth*, John Wiley and Sons, Inc., New York, 1957.
7.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Fair Lawn, N.J., 1953.
8. J.W. Mellor, "The Use and Productivity of Farm Family Labour in Early Stage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Journal of Farm Economics*, Vol.45, August, 1963, pp.517-534.
9. R. Nurkse, "Epilogue: The Quest for a Stabilization Policy in Primary Producing Countries," *Kyklos*, Vol.II, 1958, fasc. 2, pp.261-262.
10. J.W. Mellor and R.D. Stevens, "The Average and Marginal Product of Farm Labor in Underdeveloped Economies," *Journal of Farm Economics*, Vol.38, August, 1956, pp.780-791.
11. H.T. Oshima: "The Ranis-Fei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3, June, 1963, pp.448-452.
12. P.N. Rosenstein-Rodan, "Disguised Unemployment and Underdevelopment in Agriculture," *Monthly Bulletin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Statistics*, Vol.6, FAO, Rome, July-August, 1957, pp.1-7.
13. B. Kenadjian, "Disguised Unemployment in Underdeveloped Countr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57.
14. A.A. Pepelasis and P.A. Yotopoulos, *Surplus Labor in Greek Agriculture, 1953-1960*, Center of Economic Research, Research Monograph Series 2, Athens Greece, 1962.
15. M. Paglin, "Surplus' Agricultural Labor and Development: Facts and Theo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5, September, 1965, pp.715-834.

16. J.S. Uppal, "Measurement of Disguised Unemployment in Punjab Agriculture," *Th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Vol.33, November, 1967, pp.590—590.
17. D.R. Campbell, "The Measurement of Disguised Unemployment," *Th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1, pp.819—822, November, 1968.
18. G.C. Mandel, "A Note on the Concept of Disguised Unemployment with Reference to the Productivity of Farm Family Labour," *Indi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21, January-March, 1966, pp.17—24.
- (19) 丁炳然, 「韓國의 農業勞動에 관한 一考察」, 『經濟論集』, 第VI卷 第2號, 1966年 6月.

{ 筆者: 서울 大學校 商科 大學
韓國 經濟 研究所 研究員
서울 大學校 商科 大學 助教授 }